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델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유급형 직원 사례 중심으로

김상렬

아파트내 필명은 건아빠로 알려져 있으며, 삼남매의 아빠이다. 어쩌다가 친 한 번의 번개로 인해 센트럴타운 입주이전부터 4년간의 입대의 회장 역할 등을 2017년 4월에서야 마쳤다.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함께 ”아빠세대보다 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세대“를 보면서 진정한 미래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결국 주체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까칠한 성격으로 치면, 상위 0.1% 이내로 예상하지만,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다. 현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마다 1편 이상씩 현장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중이다. Nature나 Science 같은 독창적인 학술 논문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기록들을 묵묵히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메일 : srkim89@gmail.com

이미선

3년2개월여동안 성남시청 옆 센트럴타운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꿈&휴 작은도서관을 묵묵히 지켰다. 주민지원센터의 커뮤니티주임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아파트 작은도서관 장소를 고민한 바 있다.

현재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이 자랐지만 추억을 함께 공유한 그림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엄마이다. 책을 사지 않아도 중고책방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기를 좋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거기서 자극을 받고 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나이 들어감을 좋아한다.

2017년 12월 현재, 이전 경험을 살려 성남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메일 wingsjm@naver.com

오은복

성남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5단지에 있는 아름널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7년째 자원활동 중이다. 아름널 작은도서관 조성, 개관 그리고 발전을 입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아파트 작은도서관 산 증인중 한 명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델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유급형 직원 사례 중심으로

저자 김상렬 · 이미선 · 오은복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

프롤로그

2010년대 이후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는 아파트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의 의무조성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각 단지의 조건과 성격에 따라 천양지차인 실정이다. 이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배경과 아파트 단지별 여건을 분석, 진단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숙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단계이다.

3,700여명의 주민들은 2013년 2월말부터 센트럴타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했다. 벌써 입주로부터 4년여 세월이 흘렀다. 센트럴타운 아파트내 꿈&휴 작은도서관은 13년 7월 2일 정식개관을 했으니, 입주와 함께 작은도서관 역사는 동시 진행형이다. 만 4년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동의 진단은 장소를 규정하는 공간, 실제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진행하는 콘텐츠인 각종 프로그램으로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예산 항목을 포함하기도 한다. 2013년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하니, 작은도서관 공간은 주민공동시설내 구획되어 있었다. 사실 꿈&휴 작은도서관 실험의 핵심은 아파트 전체 운영의 결정 단위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의 관계 설정 방향과 속도였고, 운영의 핵심인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구성 방법이었다. 특히, 초기 1년 동안의 아파트 협동조합 위탁방식과 이후 3년여 동안의 직원형 마을활동가 고용방식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써 기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형 일반 사례와의 상호 비교 분석은 향후 운영에 있어 의미 있는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업무영역은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 센터의 전반적인 확대는 시설물의 일반 유지 관리 뿐만아니라 운영 인력의 신설이나 충원의 요인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간중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 규정에서 운영 인력의 성격도 결정된다. 또한 아파트에서 공공재 성격이 가장 강한 장소중 하나인 작은도서관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주민공동시설내에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아파트 자체의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 인력 구성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이고, 임대와의 관계 설정과 방향이 구체적인 요소이다.

그동안, 여러 마을공동체 기관과 도서관들이 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 견학을 오곤 한다. 오시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공간 내부 환경과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찍는다. 그러나 사진속에는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운영자의 얼굴이 배제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운영하는 사람과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일반 작은도서관과 달리,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초기 입주와 동시에 공급되는 공간이다. 철저히 구성 단지의 주민성과 결부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운영주체 문제가 파생되고, 운영 규모가 결정된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와 관계 설정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꿈&휴 작은도서관이 소속된 센트럴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나 공동체 마인드는 대한민국 평균에 수렴한다고 본다. 그런데, 꿈&휴 작은도서관은 3명의 상근 유급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한 명은 실무책임자이고 두명은 유급 시간제 근무자이다. 시간제 근무자는 주민이기도

하다. 시간이 되는 다수의 자원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을 찾아온다. 공동체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소득주도성장을 방향으로 설정하는 시대와 향후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을 투영해보는 재미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데 있지 않고, 아파트 입장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분석하려고 한다. 공립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써 동질성보다 주거공간인 아파트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로의 작은도서관이 갖는 이질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일부의 점유 공간이 아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최고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몇 년째 유지되는 힘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공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결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정책연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에서

김 상 렬

차례

프롤로그

Part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3. 선행 연구 및 한계 ^7

Part II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이해 및 현황

1.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률적 정의 ^12
2.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종류 및 작은도서관 관계 ^14
3. 아파트 건립연도와 작은도서관 건립 관계 ^18
4.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적 지위 및 운영 방안 ^19
5. 아파트 작은도서관 3요소 - 공간, 사람, 프로그램(예산) ^22
6.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24

Part III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간 관계 설정 ^29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분류와 특성 ^33
3. 사례 아파트 일반적 특성 ^38
4.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현황 비교 ^47
 - 1)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
 - 2) 운영 조직과 주민 참여

- 3) 독서문화프로그램
- 4) 재정적 지원
- 5)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5. [간담회]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미 및 과제 ^71
6. 입대의 산하 직원 고용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의 시사점 ^99
- (부록) 최근 4년간 꿈&휴 작은도서관 총괄 운영 자료 ^105

Part IV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향 및 제안

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공간(시설) 구축 방향 ^114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제안 ^117
3. 법률 및 행정기관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 ^127
 - 1)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및 방향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을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법률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 2) 도서관 관련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방식 재편
 - 3)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 4) 대규모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산정 방식 개선

Part V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39

(참고자료) 법령등 ^157

참고문헌 ^164

에필로그 ^166

Part I 연구 개요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관련 법령과 행정 지원 관련 규정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실제 사례를 통한 연구 내용을 명확히 비교 분석 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3㎡(1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면적은 최소면적 33㎡이상, 열람석은 최소 6석, 도서자료는 1,000권을 넘어야 하며, 설치는 건설사가, 운영은 입주후 법적 자치 기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인력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전북일보, 2013).

작은도서관 사업은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작된 문화 사업이지만 동시에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어 지금처럼 크게 확장된 사업이다. 1994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문고(文庫)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새마을문고’의 형태로 작은도서관이 제도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명칭 변경 및 의무조성단지 규모 변경, 주민공동시설 편입 여부등의 여러 과정을 걸쳐 2013년 같은 법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2016년말 현재 1,405곳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다(문화관광체육부, 2016). 이런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은 공교롭게도 국내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 유행과 함께 나타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사업 진흥법이 작은도서관

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조성시킨 결정적인 법률 규정이라 할 수 있다(김우규, 2015). 이처럼 아파트 작은도서관 규정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되어왔다. 도서관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90년대 중반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던 정책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지만 아파트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아주 낮고 조성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대다수 아파트 도서관이 실제 도서관 역할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한상수, 2012).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주류 거주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에서 대중의 욕망이 작은도서관을 확대·조성시켰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로 등장한 작은도서관은 초기에 교육·문화 공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공동독서실이나 어린이들의 독서교육 겸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김우규, 2015).

아파트 작은도서관 책꽂이에 유아나 아동도서가 많은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공부용, 교육용 도서관이라면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독서실, 유치원과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 요즘 학교도서관이 지역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특정한 연령층과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공적 공간으로 공적 기구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공공도서관에 시설 확충이나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게 수험생이나 어린이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이처럼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2016년 기준 1405 곳)의 모습이 작은도서관의 현 주소를 대신 보여준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

자면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아파트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적 장식이거나 주민들의 아이가 무료로 놀 수 있는 쉼터 공간에 더 가깝다. 좋은 아파트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 속물적인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잉태했다면 지나친 비유일까(김우규, 2015)? 부동산 교환 가치의 종속변수로서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존재나 운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살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보다는 규정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다. 분양이나 임대이나의 소유관계, 주거면적과 상관없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주택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이 대세이다(정석, 2016).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이나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 증가 속도에 비해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후원, 평가,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작은도서관 규정과 관련하여 공간 크기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내 사랑방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입주

민들이 수혜자인 동시에 자원봉사자 역할과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내일신문, 2016). 그러나 점차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써, 운동 차원에서 다른 의미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증가속도에 비해 실제 운영 방안은 철저히 주민 자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즉, 최근 작은도서관 조성 및 내부 인테리어 구성은 공공기관인 LH공사까지 포함하는 민간 건설사 지원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비해, 작은도서관 실제 운영은 철저히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1) 작은도서관 공간의 방치(한아름, 2014), 2) 작은도서관의 불법 용도변경(양산시민신문, 2016), 3) 작은도서관 운영 부실(임가영, 2016), 4) 아파트 운영주체간의 갈등으로 인한 폐쇄(김해신문, 2016) 등이다. 즉, 작은도서관 초기 안착과정의 자체적인 운영 미숙, 노하우 부족이나 부실과 지원 부족등이 원인인 반면, 정착된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주체의 절대인력의 부족, 운영주체간의 갈등과 반목이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문고까지 포함하면 1994년)된지 꽤 되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하, 아파트도서관)의 모델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여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관점에서 아파트도서관을 바라보면,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도 존재한다. 즉,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격이다.

기존 공간조성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중심의 아파트도서관 조사에서 확대하여, 공간적으로 경계가 확실히 규정된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2가지 대표

적인 모델을 비교분석 제시하고, 아파트내 자치 조직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관계 설정을 파악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아파트라는 성(城)을 뛰어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아파트도서관을 조성 및 등록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운영되고 관리되는 체계 구조의 심층적 이해속에서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통해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기본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작은도서관 제도 및 지원 현황등은 법규 및 지자체 정책 자료(경기도, 성남시)를 참고하였다. 조사연구를 위해 소개된 2군데 아파트(성남센트럴타운, 성남 백현마을 5단지)는 분양 카달로그등의 문헌자료,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 그리고 거주민 인터뷰 및 위탁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례 연구 유형의 대표적인 모델인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의 조사내용에 개관이후 2017년8월까지의 조직, 예산,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 의사 결정 방식을 포함하였다. 정량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자료, 각종 내부 기안 자료, 예산 및 자금 집행 증빙 자료, 입대의 회의록,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대관 제출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점검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대 진출입 현황과 성남시로부터 입주이후 2017년까지 거주인구 구성변화를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사업의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작은도서관 현황을 함께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의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한편 아파트 작은도서관 진단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실제 운영 담당자, 입대의 회장, 공무원, 협의회 관계자 뿐만아니라 자원활동가, 직원, 주민 의견까지 직접 담아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3. 선행 연구 및 한계

아파트도서관은 분명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해주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이다.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부방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향상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삭막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만나는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고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형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부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안수정, 2016, 희망제작소, 2015). 즉, 선행연구의 초점은 아파트 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관계형성 및 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로 살펴보면, 아파트 도서관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내용들이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임인택, 2015; 곽다혜, 2015; 아파트관리신문, 2017; 김혜영 2015; 김수정, 2016).

한편,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변천 및 설계 영역에서도 공동체 형성 관점에서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아파트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주택시장에서 외부적 단절화에 따른 폐쇄적이고 분양가 포함에 따른 사적

단지화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하였다(박한진, 2016).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입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입주자의 주거특성 및 수요에 대응한 부대복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윤여학, 2013). 실제 인천송도국제단지내 ○아파트내 문화시설의 이용실태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제공과 거주자의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맞게 문화시설이 배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장명수, 2011). 더 나아가 아파트단지는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건에서, 공동주택이 주변 지역 및 생활권과 연계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적 차원의 접근 연구도 진행(차성미, 2012)된 바 있다.

위에 소개된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듯이, 아직까지 언론보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로 아파트도서관을 이끌어가는 마을공동체 미담(?) 사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도서관의 운영 방안이 전체 아파트 관리 및 운영 구조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무시할 수도 있는 작은 영역이라는 것을 작은도서관 관련자들은 아파트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부재하다. 즉, 아파트 법적 자치 조직(입대의)의 이해,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및 방식, 운영 재원 마련 방식, 진행하는 프로그램 도입과 결정 방식, 주민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와의 관계설정 방향등이 소개되거나 공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법적의무 공간과 시설은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도서관의 운영 매뉴얼과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에서 도입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4년동안 성남센트럴타운아파트 꿈&휴 작은도서관을 중

심으로 아파트도서관 구성 및 운영 주체, 비용 부담 방법들을 소개하고 작은도서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파트 전체 관리 입장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법률적 의해

요즘 도시인구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산다. 아니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산다고들 한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도 있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이해 하는데는 행정에서 말하는 거주 주택의 분류의 이해가 필요하다. 향후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아닌 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단독주택에는 지하층과 지상2층등의 여러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즉, 한 건물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로, 주인집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구조이다. 옛날처럼 단독주택안에 여러가구가 함께 살면서 마당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도 있고, 요즘처럼 각각 독립된 가구들로 구성된 빌라형 다가구주택도 있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도 물론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은 층수이다.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부르며, 아파트는 다시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요즘 30층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보니 15층정도 아파트도 저층아파트로 부르기도 한다.

4층이하 공동주택은 총면적을 기준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된다. 건축 총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그보다 작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불린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작은도서관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일정 규모가 미달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은 500세대인데, 4층이하의 층수로 조정하는 연립주택 규모가 500세대이상의 규모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대체하여 불려도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Part II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이해 및 현황

1.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률적 정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유무는 크게 2가지가 결정한다. 아파트가 언제만 들어졌는지(건립년도)와 세대규모(500세대 기준)이다. 2009년이후에 입주한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어느 공간에 작은도서관(북카페)이 존재한다. 물론, 아주 예외적이지만, 아파트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아파트(성남시 분당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그림2-1)도 있다.

〈그림 2-1〉 유휴공간에 마련된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아파트의 최초 입주 절차는 소유형태(분양이나 임대)나 건설사 형태(공영이나 민간)와 상관없이 설계를 마친 이후 모델하우스등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도를 따르고 있다. 즉, 입주 몇 년 전 버전으로 주민공동시설이 설계가 된다는 점이다. 한편, 분양가 자율화 명목

으로 민영아파트 중심의 주민공동(편의)시설이 대형화 및 특화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편의 시설중에 작은도서관(문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육관련 특화 아파트와 고분양가 아파트일수록 작은도서관 공간 위치와 내부시설은 중요시되고 있다.

500세대규모이상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이 필수적인 시설로 포함된 시기는 2009년이다(표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동일한 규정 제55조의 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기준(표2-2)을 도서관법 시행령의 문고 기준인 면적(33m²이상), 열람석(6석 이상) 및 자료(도서 권수 1000권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일부개정 2016. 08. 11)

세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150세대 이상	○	○			
300세대 이상	○	○	○		
500세대 이상	○	○	○	○	○

〈표 2-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 가목3

시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2.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종류 및 작은도서관 관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센터나 휘트니스센터 등으로 통칭된다. 즉, 커뮤니티 공간은 거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로서 일상생활의 정서적, 기능적 중심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이용되거나 건강, 여가 및 취미, 교육 등 각종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의미한다. 법적 용어인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옥외공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단지 개발계획에 있어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는 1979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의 법적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커뮤니티 공간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 시설별로 세대수에 따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주민공유공간)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 시설로 단지마다 동일하게 설치되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2조 3항, 참고자료 PartⅡ 참조...157p)

주민공동시설 총면적(표2-3)과 종류(표2-1)는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세대이상 규모에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외에 추가로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 바,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중심의 커뮤니티센터로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주민공동시설 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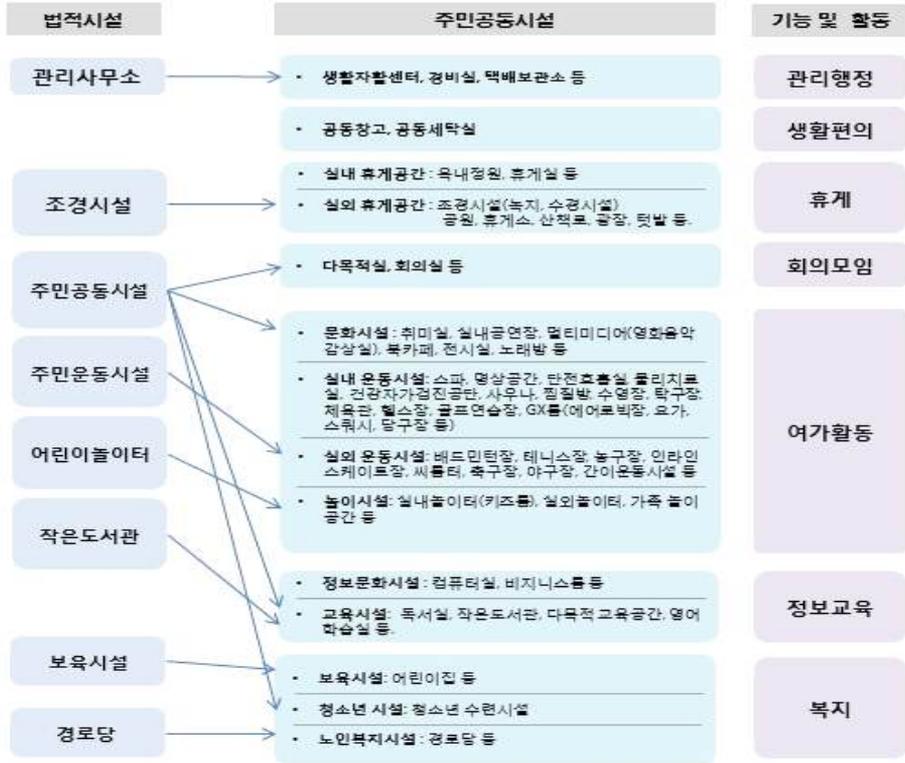
구분	세대	면적
	1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 × 2.5㎡
1,000세대이상	500㎡ +(세대 × 2.5㎡)	

그리고 2013년 1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동일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설치기준과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총량면적 범위에서 지역 특성, 입주자의 구성 등 다양한 수요에 따라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이외의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아파트는 앞으로 주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민요구의 변화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개조가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박경옥, 2016).

공동주택 단지의 입지적 특성 및 입주자의 구성 단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의 공동체 활동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공간(하드웨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전제 조건이다. 활성화된 커뮤니티 공간과 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거주단지의 부가가치 상승에도 기여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으로 정의된 커뮤니티 공간을 기능 및 활용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아파트내 커뮤니티 공간 분류



한편 2005년이후,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특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아파트 공간 설계는 커뮤니티 공간의 법적 상세 시설물을 5개 테마 기준으로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을 이용한 운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하우드 리포트, 2014). 5개의 테마중에서 각자의 단지 여건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 혹은 단지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변용하고 있다.

〈그림 2-3〉 커뮤니티 공간의 특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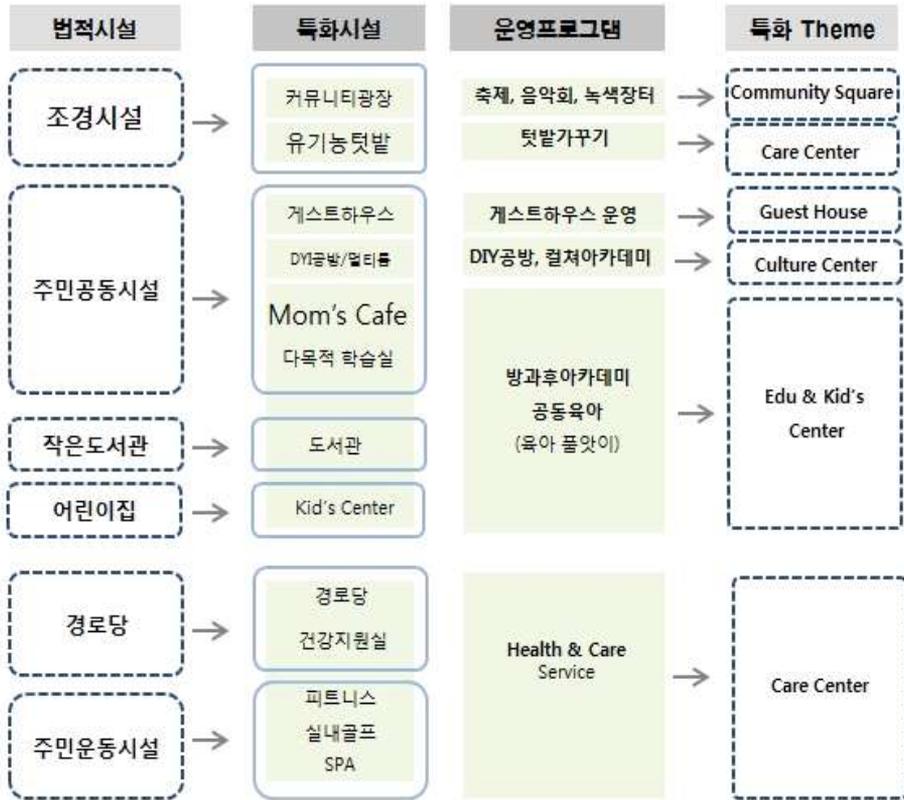


그림 2-3와 같이, 법적시설인 작은도서관은 카페, 키즈센터, 다목적학습실과 더불어 교육 및 육아 공간으로 특화되고 있다. 현재 설계하는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주민공동시설내 연계된 공간으로 규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공간 배치는 그동안 아파트도서관이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아파트 건립연도와 작은도서관 건립 관계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주형태에 따라, 아파트 구성은 변화한다. 주민공동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의 경우, 199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작은도서관 공간 자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 필수 시설이 아니었기에, 굳이 건설사 입장에서 공간구성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사회적 요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건립된 아파트를 보면, 단지내 유치원(어린이집)조차 분양했던 시절이었다(참고로, 2013년 입주한 성남센트럴타운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은 주민공동시설중 하나로 입주민 공동소유이다).

독서 문화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에서도 작은도서관 건립에 이른 단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작은도서관(그림 2-4, 2-5)이다. 1993년에 개관, 2007년 작은도서관 명칭으로 정식 등록한 푸른마을도서관은 19평 규모로 약 12,000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으로써 재능기부 강좌와 자원활동(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도서관 운영의 특징은 작은도서관 조성부터 실제 운영까지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다. 우리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기초는 작은도서관 공간 자체의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사실, 다양한 의견 대립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아파트 주거문화에서 시설투자까지 들어가는 유희공간의 작은도서관 건립은 주민공동체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내부



<그림 2-5>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강의공간



4.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적 지위 및 운영 방안

아파트 공간 및 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을 받는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법적지위도 마찬가지이다. 작은도서관도 주민공동시설의 한 공간이므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주민공동시설 운영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규정은 관리사무소 고유 업무가 아닌, 제 절차를 걸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표 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관리주체의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절차)

건축물의 구분	절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이상 제안,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1/10이상 제안, 전체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이상 제안,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

위탁 운영의 기본 절차는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민 10%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민등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의 각종 주민공동시설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오직『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수 목적(예, 노인정, 어린이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체 규정으로 일반화하여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커뮤니티센터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방법에서 몇 가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영리를 보장하지 않는 위탁운영의 현실적인 조건은 극히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지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은 입주민이외의 이용, 과도한 이용료 그리고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니

다. 공동주택 운영 관리 실무적으로 볼 때, 주민운동시설 운영 비용을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 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다. 여러 시설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중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 전체의 공간으로,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비나 관리비에 준하는 잡수익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까지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많은 애로사항에 놓여있다. 그중 하나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등의 주민간 합의이다. 일정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단지이외 주민들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올해(2017년) 초 상당한 논란 끝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가 제정되어, 입주민만이 아닌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 실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파트 경계를 허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입대의 제안이나 입주민 10% 제안이후 입주민 과반 동의로 주변 외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 규정을 통해 기존 작은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한 단지는 제 절차에 따라 개방을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공간중 하나인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은 크게 1)관리사무소 소속직원 구조이거나 2)위탁업체(협동조합 포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도서관은 부녀회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성된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규

약등에는 공동체활성화단체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뿐,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체적인 주민공동시설을 자생단체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나 갈등 소지는 공간에 대한 안전과 책임의 주체이다. 아파트에서 공용부위 관리 책임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현재 운영형태에서 관리사무소는 실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자생적이라는 명목하에 주민공동시설의 “사적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사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으로 공간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서관 운영주체와 주민간 갈등(관리비용 문제등), 임대 의와의 관계 설정 실패,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관리 영역에서 중층적으로 갈등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유형의 운영 한계점은 결국 단독 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같은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하게는 운영상의 모범적이었던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이 폐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0년여 정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역사 상황에서, 아파트 법적 자치 조직(임대)과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 운영구조의 모호함과 갈등을 계속 회피하면 이후 더 많은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상 혼란에 직면하게 될 문제로 예상된다.

5. 아파트 작은도서관 3요소 - 공간, 사람, 프로그램(예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도서관은 3가지 요소(공간-사람-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 공간 구성은 초기 작은도서관 등록단계의 조성과정과 이후 시설 개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초기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은 건설사에 의해 조성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 정책 사업이나

기업등의 사회적 책임(CSR)등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개관이후 아파트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자체 재원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등의 개선이나 도서 장비 신규 구입등으로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근무시간내 도서의 대출 및 반납, 서지 정보 제공등의 도서관의 고유 업무부터 도서관내 청결한 환경 유지는 도서관 관리자들의 업무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형 모델 vs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모델로, 그리고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 vs 무급 형태로, 주민공동시설내 작은도서관만을 관리하는 독립형 vs 연계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파트도서관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서 대부분의 운영 방식은 공동체활성화단체(자생단체)-무급(일부 실비보조)-독립형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즉, 조성된 공간에서 의지를 가진 주민들중에서 자생단체를 구성하거나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걸쳐 단지내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등록하여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독립적이고 자체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 운영 방식의 장점은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대로, 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을 일부 주민에 의한 점유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중심은 차별화된 아파트도서관 운영 사례이다.

세 번째로 도서관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도서등이다. 주민들이 아파트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도서관 자체의 의미로서 열람석에서 도서를 읽거나 대출해가는 기능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모임 위주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공간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있을 수 없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도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 도서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상상할 수 없다.

6.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아파트도서관 3대 요소중 운영 주체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형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은 순수하게 자원활동가형 운영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2016, 문화관광체육부). 하지만, 일부에서 유급형 모델도 나타나고 있으나, 자생단체 소속으로 각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급 지원형태인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지급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도서관의 운영은 주민공동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유와 관리의 두가지 관점에서 아파트도서관을 이해해야 한다.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토지와 건물 가격을 지출했던 주체가 소유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노인정 뿐만아니라 커뮤니티센터의 소유는 분양아파트는 입주자(소유자)가, 임대아파트는 임대권자(예를 들면, LH공사, SH공사)이다. 즉, 분양아파트는 전체 입주자 공동소유이고, 임대아파트는 건설사 소유로 보면 간단하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내 아동 및 복지시설 성격인 반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커뮤니티센터는 거주하는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위탁운영 형태로, 노인정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는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 형태나 외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운영방법이 결정된다. 즉,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이다. 아파트 주민이면 작은도서관 이용은 연령과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은 주민들의 공동이용과 공동부담 원칙인 반면, 휘트니스등과 같은 운동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호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입주민사이의 의식과 운영상의 합의가 전체

되어야 한다.

아파트 공용부위인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관리 책임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책임진다. 하지만,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 따라, 전문성 제고등을 이유로 전체 입주민의 과반 동의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만으로 보수적인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커뮤니티센터로 폭넓게 해석할 것인가 여부는 현재 전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준용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단지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생단체에 맡길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제 절차와 적절한 예산 배정은 선행 조건이다.

한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소유와 관리의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제안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형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즉, 주민 공동의 관리비나 잡수입으로 전체 주민들의 보편적 독서문화 및 교육 시설로서, 운영을 관리사무소가 일반 관리처럼 책임지는 모델이다.

**Part III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운영 주체 모델을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유급 직원형 모델과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의 자원활동가 모델의 비교 분석이다. 전자는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 사례를, 후자는 성남 판교 백현마을 5단지 아름넬 작은도서관 사례를 참고하였다. 참고로 소개된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은 2016년 성남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부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은 이 사례의 양 극단 지점의 어느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표3-1). 특히, 유급형 직원 모델 관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분석 및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 아파트 작은도서관 직원 유형 및 자원활동가 유형 운영 모델 일반적 비교

구 분	유급 직원형	자원활동가형
관장선임	입대의 회장 당연직 (일부, 관리사무소장)	자원활동자중 자체 선발
예 산	관리비나 잡수익 배정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 보조
조 직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식 직원	자생단체의 자원활동가
홍 보	일반 관리사무소 홍보 동일	자체 도서관 중심 홍보
감 사	내부 및 외부 감사 실시	자체 감사
성 격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 의결하는 주민공동시설	자생단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주민시설
대외성	아파트 부속기관의 작은도서관으로 아파트와 동일시함.	아파트와 작은도서관 별개 기관
예산규모	인건비 + 관리비 + 운영비 + 독서프로그램비 일체 지원	전기 및 난방정도의 필수 유지비 지원
보조금 및 지원사업	자체 예산외 보조적 지원사업 성격이며, 입주민의 외부 전면 개방	보조금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이 운영에 절대적 비중

1.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간 관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이후 입대의), 관리사무소,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운영할 사람이나 조직, 적절한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적절한 강좌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 작은도서관 만족도를 충족할만한 기재나 적절한 부담(비용 측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일반적인 특징은 위에 언급한 3가지 요소가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게 시·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주제는 3가지 요소중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람과 조직”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도서관 수요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할 공간들을 책임지면 관리할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현재의 공동 시설 이용 패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상적인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16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일반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체를 결정할 권한은 동대표 회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전문위탁업체이거나 주민들로 구성된 자생단체 모임이다(표3-2). 다만, 많은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공간내 작은도서관을 입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자원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3-2〉 아파트내 주요 조직 정의 및 역할

구 분	내 용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단지 내의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동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방향에 따라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방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커뮤니티이사(공동체활성화이사)를 선임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접수입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며 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커뮤니티 사업이 이루어진다.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로 불린다. · 관리소장의 단지에 대한 관리 적극성이 높으면 지자체의 행정적인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자생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스스로 만든 아파트 단지내 단체로서, 부녀회, 노인회, 그밖에 각종 동호회가 있다. · 기존 자생단체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일 때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단체가 단지 내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성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의 총칭이라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를 칭한다. · 공동체활성화단체는 단지의 주민 특성, 커뮤니티시설의 정도, 공동체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입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주민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투명하게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동주택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결정은 입대의 심의의 결로 관리사무소등 직원 충원에 의한 자체 운영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와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규정에 따라 입대의

및 주민 제안이후 주민 과반 동의 절차로 위탁할 수 있다. 사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운영 결정 권한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마을공동체 조성 및 발전 방향, 관리사무소 객관적인 운영 능력과 방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적이다. 현재 아파트 가치 측면에서도 주민공동시설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의무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적 방향은 입대의의 주요 관심 사항중 하나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이해의 핵심은 아파트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 유일한 법적 자치 조직으로, 입대의는 주요 안전을 심의 및 의결한다. 관리방식의 변경 및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입대의에 있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아주 강력한 입법부 기능(국회)과 일부 행정권한(행정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입대의 대표인 회장의 역할은 아파트 의사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집행 결재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결정 권한도 입대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관리규약중 입대의 결정사항). 바꿔 말하면, 단기간에 소속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폐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입대의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아파트는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아파트의 헌법으로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성문 규정이다. 특별한 관리규약에 제외조항이 없으면, 작은도서관 지원 및 사업계획등은 입대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법, 시행령 및 지자체 관리규칙등에 동대표중 커뮤니티이사(공동체활성화이사)를 선임하고 잡수익등의 자금에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 입대의와 겪게

되는 갈등이다. 도서관장 임명권한이나 도서관 프로그램 및 개관시간,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들이다. 물론 모든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대의 구성원의 성향과 특성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필수적이다(희망제작소, 2015). 그런데 아파트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입대의와의 갈등이나 협력의 관점보다 입장의 반영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2015년 서울 성북구 우수 작은도서관이었던 모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갑자기 폐쇄된 경우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에서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 지원을 한 성남판교지역 모작은도서관이 헬스장으로 변경 제안되어 폐쇄될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해뉴스, 2016년). 그 이유는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입대의와의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입대의의 결정이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권한은 입대의가 가지고 있음을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인정해야 한다. 입대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제기나 탄원서, 그리고 법적 대응 자체가 소모적일 뿐아니라 정상화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대의 심의 결정 이전에 사전 조율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입대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를 내용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주체는 작은도서관이다. 사실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작은도서관의 정상화나 합리적 대안도 도출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의 자기현신성과 노력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은 구성의 일부분일뿐더러 운영방식에 따라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거나 자생단체의 임의 구성원들이다.

보통, 입대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즉, 선출된 구성원들의 성향과 특

성,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관심도에 따라, 2년마다 아파트 관리 방향 및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 아파트 비리나 관리 부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는 그만큼 입대의의 힘이 크다는 반증이다.

후반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아파트 작은도서관 최종 운영 권한은 입대의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도, 입대의 입장과 결정에 의해 축소되거나 폐쇄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자 한다. 반대로, 작은도서관 지향의 입대의가 구성되면 상상이상의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은 일차적으로 지자체도, 네트워크도 아닌 아파트 내부의 입대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입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소극적인 불만과 문제제기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어느 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13년7월 개관) 사례는 기존 자원활동 중심의 운영이 아닌, 시설, 인력 및 예산등의 작은도서관 모든 운영방안을 결정한 입대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물론, 개관한 지 4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초기 입대의가 조직(인원)과 예산 지원등을 어떤 방식과 절차로 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초기 구성 및 본격 성장기에 일반적인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방식 적용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왜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 참고자료 PartⅢ 참조...157~160p)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분류와 특성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 분류는 아파트 공간 구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파트내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형태, 아파트 건립년도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운영 방식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 의무 조성 시기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체 분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이해에 필요한 전제이다. 다시 말해, 작은도서관 중심에서 아파트를 보는 방식에서, 전체 아파트 운영에서 작은도서관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해석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에서 커뮤니티 운영 체계 및 주체를 중심으로 그 일부분인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고자 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홀로 떨어져있는 독립된 공간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2005년 이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이하, 커뮤니티센터)의 일반적인 운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사결정권, 관리사무소의 커뮤니티센터 개입(참여)정도, 주민지원센터(이하, 관리사무소) 고유업무·위탁 여부, 커뮤니티센터 업무영역 중요도 차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 여부 등이 분류의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센터 활용 및 운영주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3-3).

〈표 3-3〉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활용 및 운영주체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방치형	시설 및 공간은 있으나, 실질적인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지 않음	입대의 책임회피, 주민간 갈등, 관리사무소 업무 해태등의 원인
위탁형 ¹⁾	운영의 노하우나 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대부분 운동시설 중심의 휘트니스 전문 위탁업체이나, 성남센트럴타운 경우처럼 아파트 협동조합 위탁

자치형 ²⁾	관리사무소 직접 고용	관리사무소 업무 영역 확대 및 관리사무소내 다른 업무 직원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 확보	주민공동체 요구가 많은 단지로서 장기적인 전망
	관리사무소 간접 고용	업무는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관계	업무 및 노동관계 고려

- 1) 입주민 1/10이상이나 입대의 제안으로 입주민 과반수로 위탁 동의 결정.
- 2) 관리사무소 직접 관리, 직원 고용형태와 영역 관심도에 따라 세부 분류

한편, 아파트내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기호나 지향하는 공동체 성격에 따라 크게 운동시설,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다. 즉,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점의 차이에 따라 1)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센터, 2)휘트니스실, 골프연습장등을 바탕으로 한 휘트니스 중심의 커뮤니티센터, 3)사우나 시설 기반을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특화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단지의 인구구성 및 단지의 운영 방향에 따라 해당 단지 영역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정도가 결국 실질적인 커뮤니티센터 책임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휘트니스 센터(헬스장) 중심 운영은 트레이너가 전체 관리를 총괄하는 구조이다. 반면, 작은도서관 중심의 전체 관리자가 선정되면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향이 작은도서관 위주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3-4).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발생과 절차적 합의가 쉽지 않아, 운영 자체가 어려운 단지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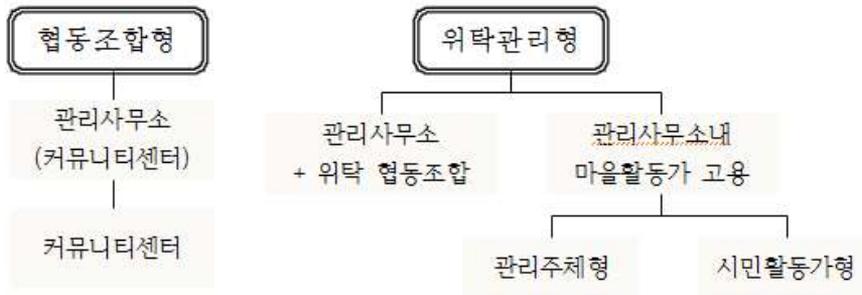
〈표 3-4〉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중심 운영 시설에 따른 운영 성격

중심 운영시설	커뮤니티 중심 인력	주요 커뮤니티 구성
운동시설	헬스장 관리자	헬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중심의 체계, 대부분의 단지(휘트니스실 중심)
문화복지 시설	작은도서관 근무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생활복지 시설	사우나시설 관리자	사우나 시설

복합 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생활시설	작은도서관, 헬스장, 사우나장
-------	---------------------------	------------------

한편,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은 결국 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시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운영 분류 체계는 2005년 이후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센터 지원 조직 모델 유형 및 시사점(김상렬외, 2016)에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향후 적용가능한 운영 모델들을 소개하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식은 1)전문위탁 형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인 “아파트 협동조합 방식”이며, 2)자치유형인 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책임질 “마을활동가”를 직접 고용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다.(그림 3-1)

<그림 3-1>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조직



2-1. 사회적 경제 유형 - 아파트 협동조합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방식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방식 자체를 사회적 경제인 협동조합이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방식이며, 관리주체인 협동조합이 직접 커뮤니티센터까지 운영한다. 또 다른 방식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의한 방

식으로, 제 절차를 걸쳐 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는 형태이다. 전자는 입주전부터 입주민들간의 합의, 직원들간의 협력 및 신뢰에 기반한 방식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없는 단지조건, 주민들의 정주 기간 및 조건 등이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공공임대나 뉴스테이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후자인 경우는 성남센트럴타운(입주 13년2월)에서 13년8월부터 14년 5월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입대의의 강력한 의결 권한 행사, 마을공동체에 입각한 입주민주주의 협동조합 설립, 입대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관리사무소의 실행 능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김상렬외, 2016).

2-2. 마을활동가 유형 - 관리사무소 직접 고용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살펴보면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영역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주택법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했음에도 2000년 초반 이후 만들어진 공동주택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법률 제정에서 “교환 가치”로서의 부동산에서 필요한 건설과정의 절차 및 하자 등의 규정 등은 구체화하는 반면, “사용 가치”로서의 부동산에서 거주상의 과정에 필요한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명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공동체활성화 방안).

각 단지의 커뮤니티센터내 시설과 공간에서, 관리사무소가 직접 “주민공동체” 차원으로 또한 주변 단지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도 크게 2가지의 내용적인 차별성이 있다. 마을활동가를 주민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시민사회형 직원)과 주민지원과 관리사무소내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관리사무소형 직원)이다.

성남센터럴타운 커뮤니티센터와 꿈&휴 작은도서관은 입주후 14년8월까지 사회적 경제 유형으로, 그 이후로 커뮤니티센터는 시민사회형 직원모델과 관리 사무소형 직원모델로 적용 중에 있다. 반면, 14년이후 꿈&휴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시민사회형 직원모델로 적용 가능하다.

3. 사례 아파트 일반적 특성 (성남센터럴타운 vs 백현마을 5단지)

우선, 사례 아파트의 기본 현황 및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아파트의 전반적인 파악없이 작은도서관 설명은 평면적인 현황의 이해일 수 밖에 없다. 아파트의 규모, 세대, 면적, 분양유무, 주변 공공교육기관 등은 거주민들의 연령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지료이기도 하다. 연령상으로 30대 위주의 아파트와 50대 위주의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 아래 사례도 소개되는 아파트들은 그림 3-2과 같이, 성남시청 주변과 판교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입주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아파트로서, 국가주도로 건립된 지구단위(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는 신도시의 아파트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함께 봐야 한다.

<그림 3-2> 성남시내 사례 아파트 위치



3-1 센트럴타운 아파트

3-1-1 센트럴타운의 지역적 이해

성남센트럴타운 아파트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성남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통합적 상징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는 것이다. 센트럴타운아파트는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이하, 성남여수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본 여수지구는 성남시의 남서측에 위치한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성남시의 지리·위치 및 심리적 중심 지역인 여수지구로의 성남시청사(2009년 이전) 이전을 통해 분당·판교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행정편익의 제공을 통해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 향상 및 도시의 균형적 상생발전은 물론 주택난 해소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계획·조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그림 3-3).

〈그림 3-3〉 성남센트럴타운 지리적 위치



따라서 성남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성남센트럴타운은 행정타운 배후 단지로서의 역할은 지리·위치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구성된 성남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성남센트럴타운은 행정구역상 성남시 중원구에 속하고 있으나 학군상, 지리·생활적, 심리·정서적으로 분당 권역에 귀속되는 생활환경적 특징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택지 개발 지역이다.

3-1-2 세대통합형 단지 구성 현황

성남센트럴타운은 2012.12.20. 준공된 5년도 지나지 않은 신축아파트로서 총 23개동 최저 5층 최고 15층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단지(29, 33평)(표 3-5)로 2017.8.20. 현재 3,617명, 1가구당 3.48명(참고로 성남시 2.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표 3-6) 단지 북측에 성남여수초등학교 및 남측에 야탑중학교가 위치하여(그림 3-4) 단지내 초·중등 학생의 등·하교 편리성과 보행 안전이 담보되고 경로당과 독서실, 어린이 박과후 보육시설인 품케어 및 여수센트럴타운 시립어린이집과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실과 꿈&휴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시설, GX 다목적룸 등의 자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표 3-7).

〈표 3-5〉 성남센트럴타운 평형별 분표 및 주택 구성현황

형별	세대수	비율(%)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총면적(㎡)	대지 지분(㎡)	비고
계	1,039	100	81,722.0	31,361.8	146,490.0	60,718	
79형	236	22.7	74.95	59.4	134.35	56	29평
84형	803	77.3	84.98	67.35	152.33	63	33평

※ 공용부분 : 주거 25,723.3(82%), 기타 5,638.6(18%), 분양공고 기준

〈표 3-6〉 성남센트럴타운 주민등록상 인구 구성현황

연도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2014	총계	3,742	709	521	288	804	749	344	185	95	47
	남	1,864	360	270	147	361	410	175	88	44	9
	여	1,878	349	251	141	443	339	169	97	51	38
2016	총계	3,673	605	511	357	630	827	394	203	108	38
	남	1,830	309	253	194	269	444	209	89	55	8
	여	1,843	296	258	163	361	383	185	114	53	30
2017.8 (현재)	총계	3,617	580	492	374	594	814	400	208	112	43
	남	1,785	297	245	184	265	429	204	93	59	9
	여	1,832	283	247	190	329	385	196	115	53	43

※ 자료제공 : 도촌동 주민자치센터

〈표 3-7〉 성남센트럴타운 주민복지시설(커뮤니티) 시설 현황

용도	면적(㎡)	사 용 현 황	비 고
계	1,722.51		
경로당	213.84	경로당 및 독서실	12.4%
보육시설	320.99	시립 센트럴타운어린이집	18.6%
커뮤니티시설	1,187.68	품케어, 작은도서관, 강의실 등	69.0%

※ 커뮤니티 및 주민복지 시설 현황(기타공용 면적의 30.55%)

〈그림 3-4〉 센트럴타운의 교육환경



3-1-3 센트럴타운 세대구성 및 거주유형 분석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도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고 이웃간 소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 분양되는 공공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노부모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사회·공공적 배려를 통해 일반분양을 포함한 세대 통합적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의해 다양한 연령대의 유입이 가능하였던 만큼 전체 가구의 60.8%가 50세 이하의 젊은 세대로 구성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다양한 정보와 소통이 가능하였던 점이 초기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요 연령대별의 조사 및 분석은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커뮤니티 운영에 기본적인 자료이다. 17년 8월 현재 전체 인구는 14년대비 3,743명보

다 126명이 감소한 3,617명(3.4%감소)이며, 0~19세이하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20대와 50대이상의 분포가 증가하고 있다. 거주에 따라 자연적인 연령 증가이외에 50%에 달하는 초기 입주구성원의 구성 변화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연령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아직도 30대 인구가 50대보다 많은 이유는 보육 및 초등 교육의 수요가 많은 단지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표인 60대의 인구가 10%미만이고 40대중심의 경제활동인구가 왕성한 활기찬 단지임을 보여준다(표 3-5). 2015년 2월이후부터 시작된 단지내 인구 구성 변화는 결국 아파트 교환 가치와 거주 조건의 점점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0~50세 미만의 구성 비율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나 불과 3년 사이(2014년~2017년)에 20세 미만의 유·아동이 2014년 1,230명에서 2016년 1,072명으로 158명(12.8%)이 줄어든 것은 거주 기간에 따른 일부 평균 연령의 자연 증가와 함께 일부 분당권역에서 여수동이 차지하는 학군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적 환경이 다소 서현동이나 수내동으로 대표되는 분당 지역보다 약한 조건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을 연령 구성과 연동하여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50세 이하의 거주자 비율이 2014년~2016년 평균 78.9%에 달하고 있어 50세 이하의 거주 만족 정도와 정주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커뮤니티(시설 및 관계·심리적 요인 포함) 관계 공유가 젊은 세대의 꾸준한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단지 내 커뮤니티의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에 안정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2017년 8월 현재, 약 50%의 입주세대 교체가운데 세입자 비율은 전체 20% 미만으로, 높은 입주자(소유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긴 정주 기간과 높은 자기 관리 측면에서 초기의 높은 커뮤니티 형성 문화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표 3-8).

〈표 3-8〉 성남센트럴타운 소유권 변동 및 거주유형별 현황

연도별	자가거주		전/월세임대 등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계	-	-	168	-
2013	1,039	100	-	-
2014	1,039	100	-	-
2015	930	89.5	109	10.5
2016	871	83.8	168	16.2
2017.8	836	80.5	203	19.5

3-1-4 성남센트럴타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관계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장래 편익이 현재 값으로 환산되는 것으로서 완전 소유권에 의해 소유와 이용이 모두 가능한 그 구매력에 기초한 교환가치와 사용자의 효용에 기초한 사용가치로 양분될 수 있다.

75형(29평형)의 최초 분양가 대비 2017년 8월 실거래가 기준 상승률이 190%에 달하고 있어 교환가치로서의 경제성 평가는 그 외형적 성장에 있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에 익숙한 50세 미만 활동적인 젊은 가구의 지속적 유입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물론 미래 시장가치로서의 경제성에 일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8).

특히 2016년3월 성남시청 경관육교가 개통함에 따라 성남센트럴타운과 성남시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성남시청 주변의 녹지 및 공원 이용은 물론 각종 강의와 인문·교양프로그램, 도서관 이용 등의 행정편의 및 인프라 수혜 경험이 확대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도 접근성이 향상 되는 등 삶

의 질적 측면에서 그 효용가치로서의 교환 및 사용가치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평가와 내부 만족에 따른 높은 정주율에 따라, 거주는 물론 전세 입자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효용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보유되어 가고 있으나, 전세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정 수준에서의 유입과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3-9).

아울러 성남 센트럴타운은 전용면적 74㎡와 84㎡의 단순한 유형 구성과 일반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1,039세대의 대규모 단지, 쾌적한 단지내외 녹지환경과 자녀 양육에 편리한 보육시설 등 직업,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평균적 중산층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단지이다. 결국 이러한 단지내 계층의 우상향 정밀 현상은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여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상승효과를 동시에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성남센트럴타운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단위 : 백만원)

기 준	평형별	매매(최고가)	전세(최고가)	분양가
2015.10.	79형	56,000	45,000	32,038
	84형	60,000	49,000	36,287
2017.8현재	79형	60,000	50,000	32,038
	84형	67,000	53,000	36,287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제공 시스템

3-2 백현마을 5단지 아파트

아름널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5단지(판교역로 102)내에 위치하고 있다. 백현마을 5단지의 주변여건은 도보로 신분당선 판교역이 3~7분거리에 위치한 대중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판교톨게이트 근접해 있는 사방팔달 교통의 요지이다. 마을 주변에 신백현초등학교와 신백현중학교, 판교어린이도서관, 판교노인복지관, 수도권 최대규모 현대백화점등이 있다. 또한, 아파트로부터 3.5km 떨어져 있는 판교도서관 및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있어 유아부터 청소년 및 성인, 노인까지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충분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분양 아파트단지로 2009년 10월에 입주한 백현마을 단지는 총 584세대로 29, 33/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 노인정 및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시립어린이집등의 기본 주민공동시설이 있다. 남북으로 길게 이루어진 단지 구성에서 주민공동시설은 전체적으로 북쪽편에 위치해 있으며, 휘트니스 센터, 노인정, 입주자대표회의실(505동), 관리사무소, 체육시설(탁구장), 도서관 열람실 및 프로그램실(502동)이 있다.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백현마을 5단지는 교통, 환경 및 교육 여건등의 입지등에서 판교신도시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중 하나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면에서도 평균 평당 3,000만원대(29평형 9억원, 33평 9억7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4.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현황 비교

앞서 소개한 성남센트럴타운 꿈&휴 작은도서관(이하, 꿈&휴)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비교 대조군으로 성남 백현마을 5단지 아름넬작은도서관(이하, 아름넬)을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아파트 운영 체계내에서 유급 직원 마을활동가 모델로 운영되는 꿈&휴 도서관의 형태는 자원봉사 형태의 자생단체중심의 아름넬 도서관과 운영방식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결과는 자체 아파트 조건에 맞게 발전해 온 독자적인 역사가 있다. 물론 두 도서관 모두 성남시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아파트 단지의 중심 공간으로서 공식적인 자리를 잡는 도서관 모델의 핵심은 주민들로부터 공인된 조직과 예산의 확보이다. 공인된다는 말은 아파트 공식 기구로서 존중받고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합의된 공간이다. 일부 주민들의 자족적인 동아리 공간(예를들면, 경로당)을 넘어 개방적인 복합 문화 교육 거점 공간 활동의 확보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자원활동과 재능기부 방식의 주민참여 방식이 결합되어야 활동이 풍부해지고 방식이 윤택해진다. 즉, 자발성과 창의성은 모든 활동 활성화의 기본 전제이다.

아래 지표들은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결과보고서” 자료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한 이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을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본장의 부록으로 꿈&휴의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특성과 결부하여 입대의 의결사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1)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

2013년 7월에 개관한 꿈&휴 공간 구성의 특징은 커뮤니티센터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로 꿈&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반영된 동선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부모는 각종 운동(헬스나 탁구등)을 이용하고, 아이들은 해당 시간에 꿈&휴를 이용한다. 운동이후 책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도서관 순례 코스가 되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꿈&휴와 때론 독립적으로 때론 연동하여 진행된다. 커뮤니티센터 구성은 꿈&휴, 복합 GX룸, 휘트니스실, 프로그램실(1/2/3실), 선큰광장, 유아휴게실(품케어-방과후 돌봄), 사우나실(실제 음악, 미술교실로 활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5). 커뮤니티센터 위치는 센트럴타운 아파트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위치해있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내부 구성 공간이 철저히 입주민 활용 위주로 재구성되어 있는 장점이 병존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상렬외 3인, 2016 참조). 꿈&휴의 일반 시설 및 설비 현황은 표 3-10에 소개되어 있다.

〈표 3-10〉 꿈&휴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명 칭	갯 수	비 고
PC	2대	사서용, 도서검색용
책소독기	1대	
테이블	10개	4인용 6개, 2인용 2개등
3단 서랍	1개	
의 자	33개	
소 파	7개	3인용 3개, 스툴등
3단 서가	20개	유아, 초등, 신착도서용
5단 서가	7개	성인도서용대형 불박이 6개
캐비닛	1개	
빔프로젝터	1개	
코팅기	1개	

〈그림 3-5〉 커뮤니티센터 안내도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위치의 핵심은 입주인 수요와 성향에 따라,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 성남센트럴타운 아파트도 물론 1인세대가 아닌 아파트 면적 규모(29,33평)가 활동적인 가족단위(평균 3.5명, 성남시 평균 2.7명)이다. 현재 꿈&휴는 커뮤니티센터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후술 참고), 이용하는 입주인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공간중 하나로 꿈&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위치가 관리공간인 관리사무소옆에 있거나, 별도로 구석에 떨어져 있어 채광, 환기나 통풍 등 물리적으로 환경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현재 성남센트럴타운 커뮤니티센터 주중 하루 이용자는 약229명이다. 그 중 꿈&휴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23%인 약54명이다(표 3-11). 꿈&휴는 개관한지 2년이 넘는 2015년부터 주7일 개관하고 있다. 국가 공식

공휴일 제외하고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부록 1-1). 반면 전국 작은도서관은 일주일 5일 운영은 약 48%인 2,816개 도서관이고, 6~7일은 2,698개 도서관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국적으로 5일이상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분포는 전체 93%인 5,514개 도서관이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꿈&휴는 일주일간 평균 개관 기간은 최대 71시간(동절기 66시간)이다(부록 1-2). 주중은 10시간(10시부터 20시까지, 하절기 21시까지), 주말은 8시간(10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 평균 개관시간은 주중 6.3시간, 주말 4.7시간을 개방한다. 즉 일주일 평균 40.9시간이 개방되는데, 평균 25시간(최대 30시간)의 차이를 보인다. 질적인 운영 시간 차이도 주중 최장 저녁 21:00까지 개방하여 입주민중 직장인 가정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또한 주말 개방은 가족단위 이용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내 선택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꿈&휴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특성은 여름철(6~8월)에 다른 계절들보다 약 25%이상의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부록 1-4). 여름철에는 장마와 무더위의 외부효과가 작은도서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암시한다. 도서관의 기본 역할중 하나가 도서 대출이다. 2016년 꿈&휴는 연간 11,405권을 대출했는데, 일당 평균 31.2권이다(부록 1-5). 2014년과 2015년 대출권수가 약 96%가 증가했는데, 인당 대출권수가 2권에서 4권으로 변경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사립 작은도서관 연간 평균은 2,712권이다. 평균의 약 4.2배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다. 추후에 아동도서 및 성인도서로 분류하여 대출의 대상도 분류하여 실제 대상별 이용빈도 및 패턴에 참고할 예정이다.

〈표 3-11〉 센트럴타운 커뮤니티센터 영역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동주민센터 위탁프로그램	자체 기획 프로그램	휘트니스	폼케어 (방과후 돌봄)	꿈&휴	휴게 장소
1일 평균이용자수	약59명	약50명	약37명	약9명	약54명	약20명
1일 커뮤니티센터 이용자수	약 229명					

※일별 진행 프로그램 및 실별일지 참고, 부록 1-3

한편, 아름널 작은도서관은 2010년에 개소하여 현재 7년째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면적은 160.6m² (약 48평)이며 49석의 열람석 규모이다. 주민공동시설은 502동, 505동의 각각 1층에 위치해 있다. 505동 1층에 휘트니스 센터, 노인정, 입주자대표회의실이 있고, 502동 1층에 관리사무소, 체육시설(탁구장), 도서관 열람실 및 프로그램실이 있다.

전체적인 주민공동시설과 함께 집적하여 위치한 아름널 도서관은 주변 조경과 보행로와의 연계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는 열람실, 프로그램실, 앞 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해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그림 3-6, 3-7).

전체적인 공간 배치에서 아름널 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모여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입주민들의 동선상에 있어 3년6개월이나 이후에 입주한 꿈&휴 도서관보다 도서관 입지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름널 작은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12시부터 오후6시(6시간),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4시간)까지 운영한다. 일주일 총 34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9500여권의 장서와 11종의 정기간

행물을 구독한다. 2016년 일년동안 750권 장수가 늘어났다. 2016년 한해 도서 9796권이 대출되었는데, 하루당 31권의 도서가 대출되었다. 한편, 연인원 19,314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하루 평균 74명 수준이었다. 아름널 도서관을 주요 이용하는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유아, 성인들이 이용한다(자세한 내용 간담회 내용 참조). 아름널 도서관 사례를 보면서, 주변 초등학교 상황과 각 세대들의 부모들의 직업유형(맞벌이 유무)에 따라,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공동체 형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심화 연구가 추후 필요해 보인다.

<그림 3-6> 아름널 작은도서관 외관



<그림 3-7> 아름널 작은도서관 입구



사례 아파트 도서관내 공간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운영시간등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입대의 주도성이 실제 공간 및 시설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사실 한번 확정되면 공간 위치 및 구성 변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대의 주도성과 관련하여 13년 7월에 개관을 한 꿈&휴 도서관은 내부 시설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시설 우선 순위와 운영 시간의 관계 측면에서, 입대의 주도성의 특징은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꿈&휴 작은도서관 시설중에서 공공도서관에도 아직까지 많지 않는 “책소독기”(그림 3-8)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상시 개방(오후 6시까지)과 야간 개방 확대(저녁 21시까지) 정책이다.

〈그림 3-8〉 꿈&휴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2) 운영 조직과 주민 참여

꿈&휴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적인 도서관 대표성을 입대이가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장은 당연직 입대의 회장이 맡고, 대내적으로는 도서관 실무자가 총괄하는 구조이다. 그 대신 당연직 도서관장인 입대의 회장이 실제 도서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다. 바꿔 말하면, 경영권과 편집권이 분리된 언론사로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도서관 조성 및 안착의 힘은 입대의의 신속한 의결 결정과 관리사무소 지원능력을 양대 축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Top-Bottom 방식이었다. 즉,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 구조는 도서관의 기본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꿈&휴는 개관당시부터 아파트 협동조합에 위탁으로 유급직원을, 14년 7월부터는 관리사무소내 직영고용 형태로 전담 직원을 두었다(부록 1-7, 1-8).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별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밑으로부터 의견 수렴의 기능과 도서관의 자발적 활동을 이끌어낸다. 꿈&휴의 참여 형태는 주제중심의 독서관련 동아리 활동과 성인과 청소년위주의 자원봉사 활동,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도서선정위원회 활동을 들 수 있다(부록 1-11~13).

도서관 특성상, 업무의 폭이나 활동은 끝이 없다. 꿈&휴의 주민참여는 운영 시간 연장이나 활동의 풍부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 서가정리등의 단순 업무 지원에서 벗어나 아파트 위·아래 연령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마을의 한 주체로서 유아나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놀이, 영어학습, 책 읽어주기, 함께놀이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인 센트럴타운 북클럽(이하, 센북)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져서 월2회 각종 주제(정치, 경제, 사회, 노동, 여성등)의 성인 독서 토론을 이끌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각 개인 세대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이 모여 2017년 문화관광체육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바 있다. 또한 모든 독서문화 활동을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있고 센북 독서 목록은 꿈&휴 도서 대출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독서동아리의 역할과 작은도서관 역할의 선순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2016년 하반기부터 꿈&휴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낭독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누구나 함께 소리내어 책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도서관이 가져야 하는 성격에 맞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센북이 직장인들의 독서모임이라면 낮시간에 10여명의 주부들이 월1회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독서동아리가 있으며, 2017년 꿈&휴의 주 사업대상인 청소년이 진행하고 있는 보드게임 동아리가 있다. 보드게임 동아리는 2016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자격증반을 이수한 주민강사와 청소년이 함께 놀이를 익힌후 도서관과 유아휴게실(커뮤니티센터내 방과후 돌봄-폼케어)에서 유아들에게 재능기부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유급 실무자의 개인적인 전문역량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꿈&휴의 장·단기 방향을 결정하고 중점 사업들을 공유하고 각종 연대 사업들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운영위의 역할은 그 동안 한

계가 있었다. 즉, 2015년도 주민참여 모임 건설, 2016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 2017년 청소년 중심의 사업 진행들을 해 나가는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 형식적인 승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2017년 8월 현재 전체 도서는 9,755권이며, 매년 일정수준의 도서도 꾸준히 폐기하고 있다. 매년 1,500~2,000권 정도의 도서와 정기간행물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 구입의 기준을 통해 시기별로 구체화하는 주민 참여는 선정 도서의 질적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매월 1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서를 선정할 것인지는 실제 도서관에 구비한 도서의 질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로 꿈&휴는 표 3-12와 같이 도서 선정 기본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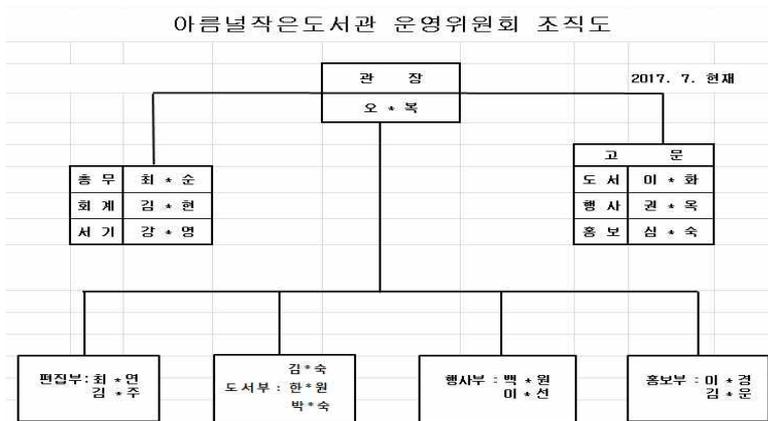
〈표 3-12〉 꿈&휴 도서구입 선정 기본 원칙

<p>도서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구입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별 : 유아(20%)/아동(15%)/청소년(15%)/성인(50%) 2. 선정 주체 : 신청자(25%)/ 신문등(25%)/ 온라인서점등 추천(25%)/ 선정위 추천(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상한 제한 필요 : 인당 년 5권 제한하고 있다. 2) 매주 주간지 및 일간지 추천도서 리스트화 : 한겨레, 중앙일보, 시사인, 한겨레21, 시네21등(정기간행 구독 일간지 및 잡지) 3) 온라인 서점 : 온라인 주간편집회의 선정 도서 및 베스트/스테디 셀러 도서, 기관 추천 도서(국립중앙도서관/책따세/자연드림/도서추천방송등) 4) 선정위원회 추천: 기획 도서물(평화/생태/법률/여성/통일/환경/노동등)등 3. 최종 : 도서선정위원회(직원, 실무자, 유아-아동담당, 청소년담당, 성인담당) 선정

아름넬 도서관의 운영조직은 총 17명의 자원활동가들이다. 주민자생단체로 주중 1일 2시간씩 한명도 빠지지 않고 상근을 하고 있으며 주말은 돌아가면서 도서관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7명 전원이 운영위원회로 매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과 행사등 도서선정은 물론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자원활동가의 관리 및 조직에 대한 고민, 교육등은 관장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교사자격증 2명, 논술교사 2명, 보육교사 자격증, 동화구연지도사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 다양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그림 3-9).

〈그림 3-9〉 아름널 작은도서관 조직도



운영사례에 따라, 운영조직과 주민참여 분야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 꿈&휴 도서관은 입대의-직원 구조로, 아름널은 관장-자원활동가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운영의 장점을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안정성, 전문성 그리고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입대의 -직원 구조가 적절한 반면, 일반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모델이 필요하다. 꿈&휴 사례의 경우, 주민 참여없이 곳감 빼먹듯 도서관 이용만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에 머무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주민 프로그램과 사업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도서관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이다. 구체적으로, 유급 직원의 주요 업무중 하나는 단지내 자원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 활동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도 추후에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3) 독서문화프로그램

꿈&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독서 중심이나 문화 위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또한 특강 형태의 일회적인지 연속적인 연강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프로그램 재원 성격에 따라 자체 재원인지 지원(공모)사업 재원인지, 또한 수익자 부담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가 있는 날”등의 외부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도서관 보조금의 자체 예산등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성남시교육지원단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한도서관 한책 읽기모임 “환상방황”등이 있고, 소설(김탁환작가), 여행(권산작가), 아동(채인선작가), 서평(박일호작가), 통일(황방열 남북관계전문기자), 과학(정인경작가)등의 저자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마을 천연제품 만들기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주제를 잡아 성인 및 학생 대상으로 4회부터 8회까지 연속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성남센트럴타운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일상적인 강좌 프로그램이 총 13개 분야가 진행되고 있다. 자체 기획 프로그램(그림 3-10)과 동주민센터 위탁 운영 프로그램(그림 3-11)들이며, 모두 실비수준의 유상 프로그램이다. 아동과 성인 프로그램 중심이고,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다. 자체 커뮤니티센터 운영 수지 개선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요구사이의 접점이다. 2016년 평균 월 200여만원의 수지를 남긴 바 있다(그림 3-12). 이런 수지는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등에 충당된다.

반면, 꿈&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입주민들의 대중적인 요구보다

는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지원 사업인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꿈&휴가 속한 커뮤니티센터는 3개의 프로그램실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입주민 요구가 있는 강좌들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꿈&휴와 별도로 진행하지만(따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강좌는 꿈&휴가 맡는(함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그림 3-10〉 자체 기획프로그램 시간표

유형	강좌명	대상	정원	강의시간		장소	수강료 (3개월)
				요일	시간(오후)		
유아 /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5~7세	6	월	3:10~4:00	도서관	105,000
					4:10~5:00		
					5:10~6:00		
	동화요리	5~7세	8	수	3:00~3:50	프로그램실	126,000
					4:00~4:50		
					5:00~5:50		
	레고닥타	5,6세	10	목	4:00~4:50	도서관	105,000
		6,7세	10		5:00~5:50		
	책과 함께 자라는 나 (논술, 토론)	7세	8	화	4:10~5:00	도서관	120,000
		초등1학년	8		3:00~4:00		
		초등2학년	8		4:30~5:20		
	멘사 창의사고력 보드게임	초등1학년	4	월	2:40~3:50	프로그램실	150,000
		초등2학년	8	수	4:30~5:20		105,000
초등2학년		4	금	5:00~6:10	150,000		
팽이의 미술교실	5~7세	10	금	4:00~4:50	프로그램실	81,000	
				5:00~4:50			
키즈발레	5세	12	화,목 (주2회)	4:10~4:50	GX룸	105,000	
	6,7세	15		5:00~5:50			
	초등저	15		6:00~6:50			
키즈벨리	5~초등저	20	월,수 (주2회)	5:00~6:00	GX룸	105,000	
유아체능교실	5,6세	15	금	4:30~5:20	GX룸	75,000	
청소년	신문으로 보는 세상 (토론)	중1,중2	8	토	2:00~4:00	도서관	240,000
성인	행복한 손뜨개	성인	12	금	10:00~12:00	프로그램실	90,000
	에어로빅	성인	20	월,수	오후 8:30~9:30	GX룸	81,000
	벨리	성인	15	금	오전 10:00~11:30	GX룸	105,000

〈그림 3-11〉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 프로그램 시간표

유형	장소	프로그램명	대상	정원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요일	시간		
어린이·청소년	여수동	클레이	초등	12	목	16:10~17:10	여수동	9,000
			미취학	12	목	15:00~16:00	여수동	9,000
		한자교실	초등	15	금	16:00~17:00	여수동	9,000
		주산과 암산	초등	15	월,수	15:30~16:30	여수동	18,000
생애주기별	여수동	요가(새벽)	성인	25	월,수	06:30~07:30	여수동	27,000
			성인	20	월,수	10:00~11:30	여수동	27,000
		요가(아산)	성인	20	월,수	19:20~20:20 18:00~19:00	여수동	27,000
			성인	15	화,목	10:00~12:00	여수동	36,000
교민회	여수동	탁구(오전)	성인	15	화,목	10:00~12:00	여수동	36,000
			성인	15	화,목	19:00~21:00	여수동	36,000
		영어회화(초급반)	성인	15	월,수	11:00~12:00	여수동	27,000
			성인	12	수	10:00~12:00	여수동	18,000
교민회	여수동	통기타	초등학생	15	화,금	19:00~21:00	여수동	36,000

〈그림 3-11〉 2016년 6월 커뮤니티센터 수입, 지출 내역

구분	6월 커뮤니티센터 운영보고(운영기간:2016. 6/1~6/30)		지출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차관기	54,720	관리자급여	1,700,000	후인지원과정, 커뮤니티센터주입 급여, 기초생활기, 장애인, 연약자, 원대배, 보충, 청소기수리비외	
			잡비 및 소모품	316,950		
		54,720	소계	2,016,950		
휘트니스	▷ 이용회원 - 155명(월 이용료 16,500원)					
	이용료	2,557,500	인건비	800,000	기본급	
	신발장 대여료	54,000		트레이너	75,000	155명*8,000원=1,240,000원
	GX룸 대관료	88,000		주말근무자	312,000	트.일요일 10:00~18:00 센터관리
	주말 탁구 이용료	9,000		평일근무자	741,000	오전 8시~10시 청소및관리
				관리비	285,300	
		2,708,500		소계	2,213,300	495,200
프로그램	▷ 이용회원 - 자재(12강좌) 130명 / 도훈동(11강좌) 159명					
	수강료(3개월 분기결제)	4,338,000	강사로	3,327,200	강사지급액+세액3.3%	
	특별강좌	275,000	관리비	26,100	특별강좌-사주명리학, 생태놀이	
	프로그램실 대관료	5,000	수강료환불	10,500		
	도훈주민센터 대관료	318,000				
	4,936,000	소계	3,363,800	1,572,200		
꿈스타전 독서실	▷ 이용회원 - 월이용20명(월33,000원/10일이상 1일 1,500원/1일 2,000원)					
	이용료	660,000	독서실사용료	135,000		
			인건비	32,500	주 1~2회 청소 및 관리	
			디지털도어락	132,000	여자실	
			관리비	39,150	노인정 관리비의 50%	
	660,000	소계	338,650	321,350		
유아 휴게실	▷ 이용회원 - 월보육 9명(월180,000원)					
	보육료	1,540,000	인건비	696,120	4대보험포함	
	대관료	10,000	부가세	55,330		
			운영비	95,700	통신비, 공기청정기, 정수기사용료	
			관리비	99,910		
			잡비	19,800	김, 간식비	
			식대	381,700		
	1,550,000	소계	1,348,560	201,440		
합계	9,909,220		9,281,260			
수익			627,960			

아름널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평가를 통한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초, 중등을 대상으로하는 독서논술, 한자교실, 한국사, 정리수납등 10여개의 강좌를 진행중에 있으며 5개의 동아리가 활동중이다. 성인 한자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능기부로 초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핸드드립동아리, 건강증진동아리, 고등논술 모임등이 활동중이다(표 3-13).

〈표 3-13〉 아름답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강좌

	프로그램 명	운영횟수
1	초등 생각을 키우는 독서논술	23
2	중등국어(중2)	12
3	청소년 독서·독해논술(중3)	16
4	고등국어(고1)	50
5	청소년 한국사,서양사,중국사	11
6	한국사&통합인문학	22
7	한자교실(초·중등)	66
8	자세교정	9
9	정리수납특강	1
10	도서관 다시 나타나다	1

입대의 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독서문화프로그램이다. 이 영역은 학교 방과후, 사교육 시장,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상호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겹치기도 한다. 도서관의 존재와 활성화는 도서를 통한 소통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럴 때, 우리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준을 시기와 장소별로 결정하는 역할은 결국 책임지는 “입대의” 역할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예산은 도서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성과 대중성 측

면에서 독서 중심이나 문화 지향의 프로그램의 결합은 결국 책임지는 입대가 결정해주고 지원해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입대의 책임과 권한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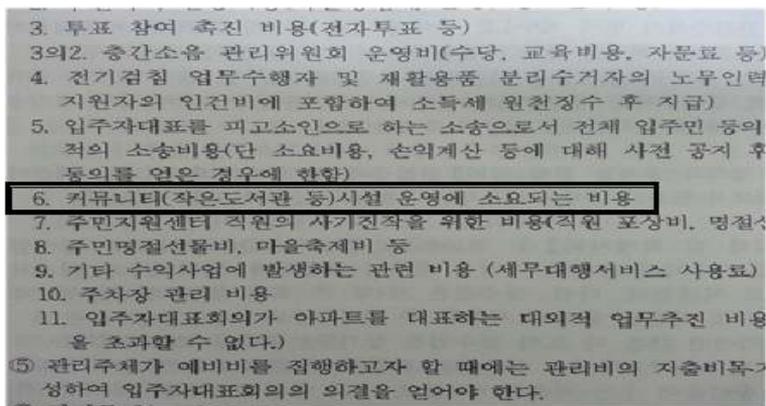
4) 재정적 지원

꿈&휴의 유의미한 특징은 마을활동가형 관리 직원과 예산 책정이다. 즉, 아파트 차원에서 조직 신설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언급한 다른 커뮤니티센터 공간과 달리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보장된 주민 편의시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꿈&휴 지원 규모는 약3,500만원이다(부록 1-14~15, 2015년부터 3년간의 평균). 크게보면,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도서구입비등이다(부록 1-17). 2013년 7월 개원이후 초기에는 연말까지 내부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이후 2014년이후부터 도서구입비, 인건비와 운영비(주로, 강의 프로그램활동) 중심으로 지원했다. 지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대 의로서 매년 12월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인건비는 시간제 근무제들과 관리자급 인건비 일정 비율(관리자는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총괄하기에 자체 수익을 제외하고 도서관 부분 기여분만 지급)을 일괄 의결한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운영비 3,600여만원(인건비포함)을 의결하여 년단위 집행은 꿈&휴 실무관리자에게 위임한다. 그 대신 매월 관리자에게 집행 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재원의 출처는 2013년 초기에 인건비는 관리비의 일반관리비 계정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는 잡수익에서 부담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모두 잡수익 계정에서 통합 지출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초기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사항에 따라 진행하였고, 이후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잡지출 근거 항목에 “꿈&휴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를 포함하였다(그림 3-13).

반면, 지자체등에서 매년 평가하여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과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있다(부록 1-15~16). 꿈&휴의 경우,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관계로 2015년부터 지자체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최상위권 (“A”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영향은 전체 예산 약 7,000만원중 자부담의 비중이 50%미만으로 떨어진 3,492만원이다(부록 1-16). 지자체 예산과 배분에 따라 다르지만, 2017년에는 1,3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 투자(책꽂이, 쇼파등 구입), 도서관 주중 1시간 연장 인건비 (원래 20시인데 21시까지, 1시간 연장), 각종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강사초청)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4). 공모사업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최의 ”평화체험통일맞이 꿈의 학교“ 사업, 경기도 주최의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천연제품만들기“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성남시 평생학습원 주최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진로컨설턴트 양성 과정“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외부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 근거는 장소인 꿈&휴에 지원했지만, 그 사업의 대상은 전체 시민으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는 자체 판단이다.

〈그림 3-13〉 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



〈그림 3-14〉 성남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2016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7. 1. 18. ~ 2. 3.
- 대상기관 : 31개관
* 등록 후 1년 이상이며 주5일(1일6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실사 평가
- 평가내용 : 201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 순위 별 : 성남시 지원기준

구분	최우수 (4개관)	우수 (10개관)	장려 (17개관)
지원액	관당 1,300만원	관당 900만원	관당 600만원
예산내용	민간경상 9,100천원	민간경상 6,300천원	민간경상 4,200천원
	법정운영 1,300천원	법정운영 900천원	법정운영 600천원
	민간자본 2,600천원	민간자본 1,800천원	민간자본 1,200천원
작은 도서관	꿈&휴 책이랑 예공 아름널	푸른어린이 출구는무지개나무 웃는책 / 들꾸에 푸른마을 은행해마루 관교이지더원 보람누리개	문지개뜨는연못 / 태평동 술쟁 / 해미안금방 성현 / 숲속 민들레 / 해담유희그 영도 / 희망동대 하은 / 갈보리

아름널 작은도서관은 2010년 10월에 개관하였으며, 전원 단지 내의 주민참여로 인한 무급자원봉사형태로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므로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으며, 시설수선비, 전기료, 난방료, 수도료 등은 아파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만원의 운영비와 20만원의 활동비(관장, 총무, 회계)를 책정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비중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집행하고 있다.(표 3-14) 그리고, 마을축제등 다양한 행사 진행시에는 긴급예산으로 추가신청을 통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지원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성남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최우수 2회, 우수 4회로 선정,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자산 구입,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연간 약300만원의 도서를 지원받고 서울시 문학나눔에 공모, 신청하여 매년 130여권의 도서를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4〉 아름날 작은도서관 입대의 지원금 지출 비율

아파트 예산 항목	구 분	비 율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금(매월)	도서구입비	50%
	각종 공과금 및 렌탈비	30%
	소모품 및 사무용품	20%

아파트 도서관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보면, 지원 영역은 1)상근 근무자 인건비, 2)도서및 장비 구입비등 운영비, 3)전기요금, 난방비등의 관리등, 4)기타 잡비등이다. 반면 재정적 공급 지원은, 1)입대의를 통한 아파트 자체적 지원, 2)작은도서관 지자체 정기 보조금, 3) 각종 공모 제안사업, 4)사회공헌사업에 의한 재단 및 기업체 자금 및 현물 후원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꿈&휴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대의 예산 책정을 통한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다. 입대이가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확정 의미는 1년단위 작은도서관 운영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파트내에서 작은도서관 지위와 역할을 주민들에게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꿈&휴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입대의 그리고 집행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꿈&휴 자체 감사도 일년에 2회, 외부 회계감사도 관리사무소와 함께 받는다. 일반적인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달리,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공간이며, 도서관 근무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명목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소속해 있는 조직)이다.

일단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가 입대의 주요 의결사항(관리규약 제27조 2항)중의 하나이고, 잡수익으로 꿈&휴를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외적인 꿈&휴 도서관장 또한 입대의 회장이 당연직 겸임이다.

물론, 이런 조직과 예산 확보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다. 물론, 제1기 입대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 3기 입대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꿈&휴를 바라보는 입대의 구성원(동대표)들의 성향은 대체로 표 3-15와 같다. 제1기 입대의는 마을공동체 관련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만장일치 입장이었다. 입주전부터 내집 마련의 노력들이 결합된 의사들이 입대의의 공동 진출로 나타난 결과이다. 꿈&휴 초기에 집중적인 물량 투여의 힘은 입대의 구성원 12명의 일사분란한 합의에 있었다. 그런 과정에 2014년 꿈&휴 관련 2가지 사건-아파트 협동조합 위탁 철회와 일부 주민 민원제기-이 일어났다. 2013년 커뮤니티센터(꿈&휴 포함) 전체를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4년 계약 해지했고(자세한 내용은 2016, 김상렬저 참조), 1기 입대의 활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초기 기틀을 다소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주민들 사이에 “아파트에서 도서관은 무엇인가?”라는 합리적인 논쟁과 합의 과정으로 전진한 측면도 있었다. 2015년 출범한 제2기 입대의(전체 10개 선거구로 조정) 구성은 작은도서관 포함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4명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물론 6명은 1기를 기조를 유지하는 동대표 성향이였다. 찬성과 반대 입장의 동대표들이 공존한 상태이긴 했으나, 물론 관리비 부분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었지만, 커뮤니티 센터를 보고 외부에서 이사오는 주민들의 존재와 반대 논리 부족, 그리고 다수 의견들이 결합하여 1기 입대의 기조가 그래도 유지되었다. 4명의 반대 입장을 가진 동대표들이 결국에는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무조건적인 반대자가 적극적인 지지자로 변했다. 2기 입대의를 거치면서, 커뮤니티센터의 부정적인 견해는 거의 사라졌

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견해를 가진 동대표들의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되었으며 더불어 꿈&휴에 대한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공유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17년 4월에 출범한 제3기 입대의 특징은 2기의 2명을 제외하고 구성원이 전부 바뀌었을 뿐만아니라 4년동안(입주전부터 아파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주체들의 퇴진-1기와 2기 입대의 회장등) 기초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퇴조하였다. 2013년 이후 2년동안 의무거주가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터 입주민들이 바뀐 첫 번째 선거로, 입대의 회장조차 2015년에 이사온 사람이다. 현재, 임기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대의 결정사항에 큰 변화는 없지만, 2018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실질적인 소통창구인 커뮤니티이사가 꿈&휴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회장 또한 커뮤니티센터 기초를 계승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저시급의 상승(2017년대비 16.4% 상승), 의사결정의 난맥상과 동대표 역할의 책임성 저하 등이 다소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요인으로 보인다.

〈표 3-15〉 입대의 성향에 따른 꿈&휴 작은도서관 성향

구 분	1기 입대의 동대표	2기 입대의 동대표	3기 입대의 동대표
임 기	13년 4월	15년 4월	17년 4월
인 원	12	10	8 (2명 공석)
찬 성	12	6(초기) → 7	4
반 대	0	4(초기) → 2	1
보류거나 대세추종	0	0(초기) → 1	3
비 고	회장 주도	회장 주도	회장&커뮤니티이사 주도 (강도 약함)

본질적으로, 도서관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자원 활동가나 동아리 구성원들이 입대의 동대표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이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요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대표 선출이나 과정은 관심이 없으면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기 바라는 생각은 지극히 이

기적인 발상으로, 결국 선출된 동대표들의 선의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대의는 작은도서관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조건도 만들어 주지만, 단기간에 폐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나 네트워크가 아파트 자체의 구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결국 입대의로부터 힘이 나오는데, 작은도서관만 신경 쓰겠다는 것은 세대로 비유했을때 구조는 관심이 없거나 회피하고 부엌만 신경 쓰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아파트에서 마을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조는 입대의 운영의 실질화와 현실화이다. 길게보면 동대표 역할 수행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확신한다. 갈등과 조정이 없는 관계가 없다. 힘들더라도 귀찮다고 어렵다고 회피하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도서와 교육으로 만나는 이해당사자들만의 공간으로 축소된다.

한편, 꿈&휴가 입대의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는,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에서 입대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꿈&휴는 조직과 예산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아파트내 홍보 분야이다. 꿈&휴 사업은 입대의가 결정하는 사업이다. 모든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홍보 관련 지원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다. 입대의 사업이다 보니, 현수막 거치는 일반 관리직원들의 지원으로 단지 어디에서나 부착이 가능하다(그림 3-15).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준하는 비중으로 오프라인상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 게시판 공지(그림 3-16)나 온라인 카페(그림 3-17)나 sns상 페이스북(그림 3-18)이나 밴드(그림 3-19)에 연동하면서 공지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꿈&휴는 일상적인 실무 부담이나 지원에 대한 감정노동대신 콘텐츠 기획이나 운영의 내실을 추구하면 되는 구조이다.

〈그림 3-15〉 센트럴타운 중문앞 현수막 거치



〈그림 3-16〉 센트럴타운 동별 엘리베이터내 홍보문 게시

[공&유착은도서관]

**환경교육과 함께하는
친환경 천연제품 만들기 성인과정**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천연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환경교육의 일익** 되는 천연제품 만들기에 참여하세요.

- 대 상 : 성인 (센트럴타운, 연꽃마을, 산돌마을 주민 대상)
- 시 간 : 10시30분~12시
- 장 소 : 옥요빌 - 산돌마을, 금요빌 - 센트럴타운 (물 중 한곳 신청해서 신청)
- 접수 및 신청 (강의 듣는 장소의 도서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옥요빌(금요빌)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방문일수 10명, 전화 10명)
 - 공&유착은도서관 ☎031-756-0128, 산돌마을도서관 ☎031-753-6430
- 수강비용 : 재료비 - 35,000원(0회), 강사료 - 경기도 지원
수업료는 접수일과 강사님께 별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및 신청 : 성남환경운동연합 '순채코미리'성남환경교육원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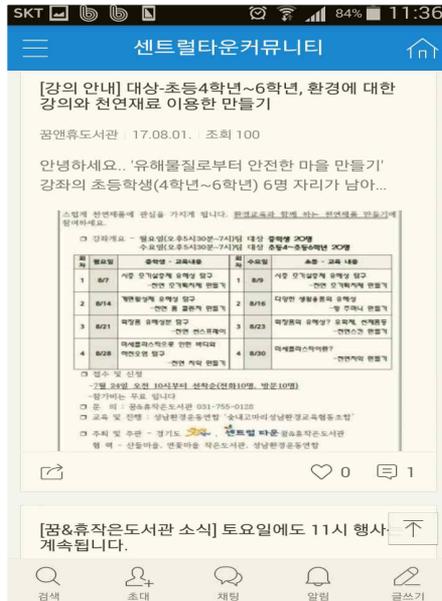
※ **특강-일수합의** ※ 8/25(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센트럴타운)

회	교육 내용	특강(강사명)	
		날짜	계절
1	환경을 중해할때 활용 / 특강재료 공유성, 염색, 제품 완성물	8/31	한양스킨 9/3
2	계면활성제 유해성 알구 / No-케미 생활	9/7	홍근찬처 9/8
3	미생물공과와 천연물 추출의 진실	9/24	주봉근원 9/25
4	미세플라스틱 바다와 육천 환경 유해성	9/21	한연희원 9/22
5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생활 / 액앤셀 오일	9/28	오일100세원 9/29
6	환경 적외선 피부 건강	10/2	차용근원고 10/3
7	유해성물질 함유 - 신, 술, 알코올	10/19	황주머니 10/20
8	유해화학물질 교육과 생활의 변화 기후변화(미생물) (성남도서관)	10/26	한연희원 10/27

주최 및 주관 : 경기도 교육, **센트럴타운** 공&유착은도서관
*2017년 경기도 미술공동체 지원도서관 활동지원 사업사업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성남 센트럴타운 주민지원센터장(지연생원)

〈그림 3-17〉 센트럴타운 네이버 카페



〈그림 3-18〉 꿈&휴 작은도서관 페이스북



〈그림 3-19〉 센트럴타운 커뮤니티센터 밴드



반면, 아름널 도서관은 입주 초기당시(2010년 10월) 도서관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 및 입대의에서는 작은도서관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의 개관을 준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입대의 설득 과정이 만만치 않았음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7년여 동안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지원 및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활동 차원에서 자생단체(공동체활성화단체) 형식으로 지원하는 구조인데, 활동가들과 입대의 구성원간의 운영상 합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입대의에서 지원하고, 활동은 도서관이 책임지고 하는 구조이다.

아파트 도서관 운영에서 입대의와의 관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입대의 관리 방향에 따라 도서관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대의 결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할 수도 있지만, 폐쇄까지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입대의와의 관계는 입대의 권한을 인정하는 냉정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한 한편 도서관의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입대의 구성원으로 직접 진출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동대표들과 소통도 경주해야 한다. 입주민 입장에서 아파트 도서관의 현재 조건과 미래 목표를 정하고, 현재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자기 진단은 필수적이다. 입주민 입장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이 높지도 않은 조건에서 그리고 권한도 미약한 현실에서 중단기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5. [간담회]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미와 과제

참여자

- 연구자 - 김상렬(성남센트럴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년 역임)
이미선(꿈&휴작은도서관 운영자, 사회자), 오은복(판교 아름널 작은도서관 관장)
- 직 원 - 조은주(꿈&휴작은도서관 상근)
- 신규 작은도서관 - 하연서(산들마을 푸른숲 작은도서관 준비위원회)
- 꿈&휴 작은도서관 이용자 - 강순영(센트럴타운 주민, 직장인), 송기동(자원활동가 대표),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 - 김진아(가명)
-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 공옥례(판교 이지더원 작은도서관 전임 관장)

“강순영 - 자원봉사로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질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작은도서관 현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 공동주택 - 거주연식/아파트 평형 및 규모/세대분포/분양 및 임대비율 등
- 작은도서관 - 개관일/역사/운영시간 등 기본적인 자료

[답변]

오은복 - 저희는 판교지역이 신도시가 되면서 처음 입주한 백현마을 5단지에 위치해 있어요. 2009년 입주하고 2010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586세대이구요. 29, 33, 34평형으로 모두 분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위에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 마을 안에 판교 어린이도서관, 판교 노인복지회관, 조금만 가면 판교도서관, 판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모두 웃음) 주거 환경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기에 최적화된 곳입니

다. 5단지에는 판교역에서 걸어서 3분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아름넬 작은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고 평일에는 12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요. 총17명의 무급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구요. 평일 주1회 봉사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2시간씩 4명이 상근을 하며 토요일은 돌아가면서 상근을 합니다.

강순영 -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오은복 - 자원봉사로 유지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이는 유지가 어렵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모든 봉사자가 운영위원으로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며 매주, 매월 도서관에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사회자 - 성도협 운영위원으로 나오셨지만 공옥례 선생님 이지더원 관장을 오래 하셨지요?

공옥례 - 네, 4년정도 했어요.

사회자 - 그럼 이지더원 작은도서관의 상황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공옥례 - 저희도 아름넬과 비슷한데 2009년 입주를 시작했고 7월 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현재 22명이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항상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봉사자는 있어요. 고맙지요. 초등학교가 옆에 있어 젊은 층이 많아요. 젊은 주부들이 유입이 되면서 봉사자도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장이지요. 관장이 바뀔때가 되면 서로 책임을 지지않으려 해서 현재 반 강제적으로(미소) 1년씩 돌아가며 관장을 맡기로 했어요. 저희는 하루에 2명이 3시간씩, 총 하루 6시간 문을 열고 있어요. 세대수는 720세대 이구요.

사회자 - 이지더원의 경우는 제가 한번 가보긴 했어요. 주위에 아파트로만 둘러싸여 있어 도서관 운영에는 최적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

었어요.

공옥례 -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정문쪽으로 들어오는데 정문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사회자 - 아름널의 경우 주위 상권이나 여러 공공기관으로 인해 분산되는 분위기라면 이지더원의 경우는 주거 밀집형으로 도서관에 집중되는 느낌이 드네요. 꿈&휴는 어떤가요?

조은주 - 1039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많아요 평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문을 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을 열어요.

“오은복 - 꿈&휴는 상근자가 몇 명인지. 주말에는 누가 상근을 하세요?”

오은복 - 상근자가 몇 명인지, 주말에는 누가 상근을 하세요?

조은주 -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있구요. 저녁선생님과 주말 근무자가 따로 있어요.

사회자 - 꿈&휴는 세분 모두 유급 상근자이구요. 주말 근무자는 도서관에서 주로 머물긴 하지만 이곳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내기 도서관 산들마을 푸른숲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연서 - 저희 산들마을은 2015년 11월 입주를 했구요. 21~25평형으로 1171세대예요. 저희는 임대와 분양이 반씩 정도 섞여있어요 푸른숲 작은도서관 개관은 17년 3월에 했구요. 작은도서관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분들이 봉사로 상근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1시부터 6시까지 열고 있어요.

[질문]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누구인지요?

[답변]

오은복 - 주 이용층은 초등, 유아, 성인층이에요 최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오시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층은 초등학생이에요.

공옥례 - 저희도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영,유아, 초등이 대부분이고 성인 이용자도 역시 본인의 책보다는 아동도서를 대출해가고 있어요.

사회자 - 개관이후 이용층의 변동은 어떠한가요? 성인이용이 많아졌다거나...

오은복 - 소설만 있는 섹션이 있어 성인이 이용하고 있기는 해요.

공옥례 - 저희는 개관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없이 유아, 초등이 주 이용층이에요.

조은주 - 저희도 어린이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성인도서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한번 이용한 성인은 꾸준히 오시는 편이에요. 특이한 것은 청소년 이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초등생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학년마다 다르니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중학생은 동일한 시간에 하교를 하니 집에 가는 길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든 채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와이파이가 되니 인터넷도 하고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청소년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회자 - 꿈&휴는 올해 주 사업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오은복 - 청소년들이 솔직히 갈곳이 없지요.

조은주 - 작년부터 청소년 봉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순영 - 초등학생이 자라서 도서관을 계속 이용하는게 아닐까요?

사회자 - 중요해요 꾸준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조은주 - 방학동안 50명이상이 봉사를 했고 스크랩, 보드게임, 책읽어주기, 영화상영 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했더니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끼고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하연서 - 저희 단지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은 곳이라 주로 영,유아가 있는 엄마들이 주 이용자라고 해야할 것 같아요.

“송기동 - 도서관은 나의 큰 거실이라고 느껴져요”

[질문]

각자 아파트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오은복 - 책을 빌리러 오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주부들은 카페같은 곳에서 교류하고 집으로 가기를 꺼리는 것 같은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서로 교류하는 장소로 보는 것 같아요.

사회자 - 음... 그럼 꿈&휴의 실제 이용자이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용자에서 봉사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기동님, 직장맘으로 평일 낮 이용이 어려우신 강순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꿈&휴는 당신께 어떤 공간인가요?

송기동 - 처음부터 하나 하나 장만하는걸 다 보아왔고 정리되는 과정을 다 아는 입장에서 도서관에 많이 애정이 생겼고 집은 작은 거실이지만

도서관은 나의 큰 거실이라고 느껴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모르다가 5년째 왔다 갔다 하니 위층,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도 남다르고 직접 와보진 않아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좋아요.

강순영 - 초기에 주말봉사도 한 곳이었고 중학생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는 모습, 연애하는 아이들도 보여요. 아이들에게 이런 편한 공간이 있다는게 든든한 느낌이에요. 으스스한 곳이 아닌 도서관에서 함께 있는 모습들이 좋아보여요. 소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집에 책을 쌓아두었다가 우리 도서관이 나의 또 다른 책장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책들을 모두 입양보내기도 했고 같이 꾸며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더 좋아요 한번 와본 분들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 하셨었는데 이런 좋은 공간을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알렸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사회자 - 입예협때부터 그리고 입대의 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직접 공간구성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김상렬님께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상렬 - 꿈&휴의 차별화된 점은 유급의 마을활동가급 전담직원들이 있다는 점이지요”

김상렬 - 입대의 회장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인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자신의 집 몇 평 더 늘리려고 베란다 없애고, 별의별 인테리어 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읽고, 여름철 더워서 피서도 오는 그런 공간 그리고 도서관가면 문화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하루 100명정도의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라고 봐요. 그런 공간에 투자개념이나 지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죠

[질문]

우리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은복 - 이용하는 아이들은 행사가 많은 도서관 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면 꼭 가고싶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때부터 쪽 있었던 아이들
중학생이 되어 행사때 자원봉사를 하니 몸에 익은 것이 있는지 활동을 너무 잘해요 참여하는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은 도서관, 그 정도로 저희 봉사자들이 행사를 잘 치른다는 말씀(웃음)

조은주 - 프로그램이 많은 도서관이요?!

사회자 - 저희는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등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조금은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랑입니다~ (웃음)

하연서 - 저희 도서관은 공간적으로 탁 트여 있어 답답함이 없어요. 공간이 좀 넓은 편이죠.

김상렬 - 도서관을 책임지는 입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자 - 네, 역시 입대의 입장에서 보시는군요.

김상렬 - 음... 그렇게 되지요.... 유급의 마을활동가급 전담직원들이 있다는 점이죠. 정해진 시간에 직원이 앉아있거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의 포인트겠죠. 유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 아닐까 싶어요...그리고...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강좌등이 아파트 게시판 등을 이용해 항상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질문]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공공 작은도서관, 주택가 작은도서관, 종교기관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과 구별되는 게 있는지요?

[답변]

공옥례 - 성남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도 솔직히 구별을 둔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운영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운영주체별로 모여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해서 성남시 담당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논의중이에요.

사회자 - 아... 네... 성도협에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상렬 회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김상렬 - 저 이제 회장이 아닌데요..(웃음) 500세대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조성된 점이 가장 큰 차이죠. 왜냐하면, 사립은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발적인 결정으로 만들지만, 아파트 도서관은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의무적이기도 해요. 입주했더니 아니면 이사왔더니 작은도서관이라고 공간이 있고 운영되고 있는거니까요.

**“공옥례 - 운영비는 임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인건비는 제외지요. 도서구입비도 없어요.”**

[질문]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인적자원 : 1) 회원수, 2) 이용자수, 3)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

공간자원 : 1) 도서권수, 2) 대출권수, 3) 공간크기, 4) 시설투자 정도

프로그램 : 1) 독서포함 문화프로그램, 2) 운영시간, 3)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연결정도 : 커뮤니티공간 연결성(connectivity)

[답변]

오은복 - 회원수는 300여명이었는데 현재 프로그램 변경에 의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서 현재 130명 정도예요, 장서는 9000권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폐기작업을 하지요 만권이상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초,중,고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위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해서 판교도서관에 없는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회자 -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도서구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도서구입비가 따로 편성이 되는지요.

오은복 - 월 운영비를 50만원 정도 받아요 임대에서요 그중 매월 20만원 신간도서 구입을 해요 나머지 비용은 도서관운영에 모두 사용하지요 전화요금을 비롯한 모든 제반비용을 3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지원금으로 진행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옥례 -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임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인건비는 제외지요 도서구입은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지자체 지원으로 들어오는 책이 다예요. 프로그램의 경우도 아름넬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작은도서관 지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장서는 만권정도를 유지하고 있구요 도서관 규모는 17평정도 되요.

오은복 - 세대수가 500여 세대이고 평수가 크지않아 도서관 공간이 작은 편

이예요 입대의 회의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구요 공간이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판교의 아파트들은 집기와 도서 1000권은 있으나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운영할 주체가 있으면 도서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주체가 없으면 도서관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사회자 - 네, 질문에 보면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무얼 말하느냐 하면 꿈&휴의 경우 엄마가 운동을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운동하는 동안 마당에서 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할수 있게 동선이 고려되어 있거든요.

공옥례 - 저희 같은 경우 건물자체가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목적으로 지어져 모여있는 형태예요 아파트 입구에 별도 건물로 모여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왔다가 책 보러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오은복 - 상근자가 있으니 여름에 휴관이 없지요?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 관리사무소를 잘 안가지 않나요?(웃음)

오은복 - 도서관이 별도의 동 1층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워요.

조은주 - 하루 130명이 이용하고 80여권을 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그렇지만 머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질문]

작은도서관하면, 생각나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을텐데요.
한가지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순영 - 작년에 서평집 만드는데 참여한게 첫번째구요, 두 번째는 직장맘으로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여름 긴 휴가때 아이랑 책을 읽고 에어컨이 나오고 와이파이가 되는 룸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좋았어요. 하루 거의 3~4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고 요즘도 토요일의 경우는 상주하다시피 해요.

사회자 - 참고로 꿈&휴가 작년에 경기도 주최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0페이지에 달하는 서평집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주민, 성인, 청소년, 초등, 강사님들께 서평을 받았지요. 저도 기억나네요.

오은복 - 상근자가 있으니 여름에 휴관이 없지요?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름 휴가때면 1주일씩 휴관을 해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휴관이라고 써있는데도 도서관 앞에 와서 앉아있는걸 보면 좀 그래요. 학교가 방학이라 더운 여름 아이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봉사자들이 휴가를 가야하니....

사회자 - 예고... 문앞에 앉아 있었을 아이들이 생각나네요... 다른 분 또 다른 기억? 기동씨?

송기동 - 예전에 크리스마스 행사로 슬라이드 필름을 상영하며 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을 청소년들에게 할수 있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요.

사회자 - 제가 그거 빌려서 들고 출, 퇴근하느라 애썼습니다~(모두 웃음)

오은복 - 둘째아이 19개월부터 계속 봉사를 했어요 '도서관 아이'라는 그림책

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도서관에서 자랐어요.

사회자 - 자원봉사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상근자가 아이를 업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옥례 - 초창기 도서관을 만들어 간 과정이 기억나는데 그중에서도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분들과 함께 어울렸을때가 소중한 생각되구요 성인독서동 아리를 통해 도서관이 많이 성장하고 자원봉사자들로 유입되었고 그분들과의 추억이 많아요

“사회자 - 도서관의 기본인 ‘책’이 점점 밀려 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김상렬 - 저는 2014년 전국민적인 슬픔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 3년동안 작은도서관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세월호 참사 자체가 색깔론으로 덧칠되려고 할 때, 이름 없이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봐요. 야탑중학교 앞에서 노란리본 나누기가 30분만에 마무리된 추모열기에 놀라웠죠.

사회자 - 맞아요 해마다 노란 리본을 만들고 도서전시와 함께 추모의 자리를 만들었었지요... 저에게도 큰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네요.

하연서 - 저는 개관날짜가 계속 미뤄져서 앞당긴다고 밤이며 새벽이며 나와서 추은겨울에 호호 불어가며 컵라면 먹으며 책 등록할 때가 생각나요. 개관하면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질문]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서관인가 vs 마을거점 공간인가?)

[답변]

사회자 - 저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은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크게 2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가 어린이도서관이다. 동의하시죠...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책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 기분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복 - 판교에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을 보면 앞으로 점점 폐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지극히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강순영 - 아이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좋지만 책을 조용히 읽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서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왔다가 프로그램으로 소란한 도서관을 보면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침 그때 이용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게 될까봐요...

김상렬 - 현재 표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이라고 보이지만, 저도 도서관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첫번째가 정보제공이지요. 마을의 작은도서관에 가면 각종 식물, 동물, 곤충도감들이나 백과사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도서 및 간행물 선정이

중요하다고 보구요. 그런 측면에서 일제시대에 부역한 친일인명사전
들이나 뉴턴의 생애를 다룬 전기등은 가정(세대)과 작은도서관의 역
할분담에서 꼭 필요한 도서들이라고 봐요.

사회자 -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도서 선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주신 듯 하네요.

“사회자 - 아파트마다 책임지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하연서 - 열려있으면서도 닫힌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세대 차별없이 어울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공간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면 서도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쉬다 갈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
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가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마을활동가 모델 vs 자원봉사자 운영)

[답변]

김상렬 - 꿈&휴는 임대이가 책임지죠. 도서관등록증에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
의로 되어있어요. 실제 집행은 관리사무소 소속 전담 직원들이 운영
을 하는 구조인데, 관리사무소내 작은도서관 관련 조직과 예산을 입
대이가 의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는 아파트 관리에
준하여 임대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오은복 - 아름답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모인 분들이 자생단체로 등록을 해야
임대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생단체로 등록된 자원봉

사자 모임이 아름널을 책임지는 단위지요. 결국 저네요^^ 관장이
니...

[질문]

매년 자체 아파트의 예산 지원 규모는 어떠한가요?

[답변]

오은복 - 아름널 작은도서관은 매월 50만원의 운영비와 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활동비는 관장, 회계, 총무의 활동비인데 모았다가 자원봉사자들 식사비로 사용하지요... 그리고 월50만원의 운영비에서 50%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을축제나 행사를 해야 할 경우 추가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때도 있구요.

공옥례 - 이지더원은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받아요.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활동비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사무용품 및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입대의 의결로 지급받고 있어요.

오은복 - 부럽네요.... 우린 50만원외에 없어요^^

하연서 - 아직 매년 책정된 것은 없어요. 올해 4월부터 월20(잡비-간식비)만원, 8월부터는 직책수당으로 시급5,000원을 입대의 의결을 받았구요. 그것도 9월까지 한시적이예요.

사회자 - 꿈&휴는 인건비만 년2,5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년 800만원으로 해마다 아파트 예산 편성시에 안건으로 상정되지요. 이렇게 아파트마다 책임지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김상렬 - 아파트 관리를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질문]

대내적 부분 : 관장, 유급직원, 성인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간의 관계 설정 문제

[답변]

사회자 - 도서관 내부 조직간의 관계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상렬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김상렬 -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서관장은 당연직 입대의 회장이 맡는데, 운영은 전담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원칙이란 회장포함 입대의는 큰 틀에서 작은도서관 방향정도만 설정하고 관리사무소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구조의 안착이라고 봐요. 자원봉사자도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발적으로 하는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전담 직원은 도서관 관련 직무능력과 민주적 소통을 위한 협업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임금을 주고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써 직원인데, 무급 자원봉사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된다고 봐요. 무엇보다 도서관 직원들의 시각에서만 아파트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은 아주 작은 공간이라는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독립된 곳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와 함께 가야만 하는 공간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에요.

사회자 - 그렇지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과 다른 점을 또 한번 짚어 주신 것 같네요. 현재 개관 후 힘들어 하고 있는 산들마을 푸른숲은 어때요?

하연서 - 정식으로 임명된 관장은 없어요. 개관 초 ‘산들푸른숲지기’(13명) 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도 현재 해체되다 시피한 상황이에요. 속상해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지속적인 문제, 개인시간 조정의 어려움, 무급 자원봉사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11~13시까지 무급으로 도서관 자원봉사가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입대의회의에서 13시부터로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어린 자녀들 엄마인 자원봉사자분들은 13시엔 대부분 아이들 때문에 도서관 봉사가 어려워 그만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또한 도서관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못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이사가 빈번하고, 생각보다 폐쇄적인 성격의 단지여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전무한 상태예요...

사회자 -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군요. 이렇게 입대의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달라질수 있는게 아파트 작은도서관이지요... 씩씩하네요

[질문]

대외적 부분 : 아파트의 법률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자생단체와의 관계 부분

[답변]

사회자 - 이번에는 아파트의 대표기구죠. 입대의, 관리사무소, 자생단체의 관계를 한번 짚어볼까요?

“하연서 -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서관 운영관련 회의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번복되고...”

오은복 - 저희 단지는 지금까지는 관계가 좋지만 2년마다 바뀌는 동대표의 성향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생단체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중에 동대표를 나간 분이 계셨어요 울면서 관두셨죠... 주민이 밤늦도록 민원으로 전화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공옥례 - 저희 단지는 입대의에 요구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까지는 잘 지내고 있구요. 공간을 열어 행사를 할때도 입대의에서 의결을 받아 진행했었어요.

김상렬 - 입대의가 실질적인 책임주체이니, 입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은 어떤 장소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작은도서관 자체가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공간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 자신이나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인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항상 공개모집과 투명한 선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 끼리끼리 다 한다고 입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요. 특히, 동네에서 일하다 보니, 자원봉사자

포함 근무자들이 추상같은 자기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자 - 저도 예전에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원칙이 무너지질때 분명히 한쪽에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연서 - 저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서관 개관을 하기전에 '작은도서관 준비 위원회'가 있어서 개관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사회자 - 말씀중에 죄송한데 작은도서관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연서 - 입대의 회장, 주민2명, 전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저요. 개관 후에는 도서관 위원회를 모집하고 운영하게 하겠다는 임차인대표회의(11명) 결과가 있었구요. 입주자대표회의(5명)에서도 공감했었는데 두 대표회의의 마찰로 개관이 4개월이 늦어지고, 개관후에도 운영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개관시기에 입대의회장이 사퇴를 하고 주민도 여러명이 사퇴를 반복해 현재는 '도서관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소수의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관리소장님은 주민 커뮤니티(도서관 포함)에 적극적이셨으나 새로 오신 관리소장님 이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서만 도서관에 관여하고 있어요. 단지내 자생단체는 아직 없는 상태이구요, 도서관 관련해서 단체를 만들면 지원해주겠다고 임차인대표회의 결과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서관 운영관련 회의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번복되고 현재는 커뮤니티 시설을 먼저 운영한 후에 커뮤니티시설 직원에게 작은도서관을 운영(전반적인 사무업무, 도서관지킴이)까지 하게 한대로 입대의 회의에서 결정되었어요. 기존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권한을 보장해주면 적극 지원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달 입대의 회의에서 이래 저래 말이 달라지니 지금은 도서관 자생단체 결성의사도 포기한 상태예요.

“김진아 - 아파트 도서관은 일관성이 없어요”

사회자 - 힘든 과정이 있었네요...

[질문]

각 단위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답변]

오은복 -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걱정은 있는게 사실이에요. 세대가 변화하면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데 누가 도서관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까 하는게 제일 큰 고민이죠.

김상렬 - 자원 봉사로 운영하는 곳은 그렇죠...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 직원들이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을 또 다른 업무추가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자 - 작은도서관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연서 -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들의 도서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프리젠테이션도 했어요. 전국 작은도서관의 추이등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결과는 문닫자고 하더군요. 허탈해요. 주

민들도 도서관이 시끄럽다부터 홍보문 붙인거 보고 지저분하다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도 없어 개관시간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질문]

운영관련하여 예산중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바라보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
련된 고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김진아 - 솔직히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일반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하고 싶은대
로 운영하면 되니 별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작은도서관
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할것 같아요. 잘 운영
이 되고 있다기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가 바
뀌거나 뭐라고 시비를 걸면 받았던 보조금도 사용이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와 지원하는 부분도 다르고 서로 업무를 잘 모
르기도하고 ...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것에 대
해서도 좀 부정적이에요. 다른 주민이 이용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사회자 -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요?

김진아 - 기준을 정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걸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인근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
램을 왜 도서관에서 하느냐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단
체간 감정이 안 좋아지면 전화해서는 작년에 용했던 보조금 관련
해서도 꼬치 꼬치 캐묻기도 하고... 아파트 도서관은 일관성이 없어요.
입대의, 관리사무소의 유대관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사회자 - 그럼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김진아 - 경기도에서 움직여주면 시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긴한데 인건비보

다는 사업이 더 좋아요^^ 책정이 된다면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정산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후 시행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해요.

“공옥레 - 프로그램 진행비로만 사용하기에는 지원금 문제 있어요”

[질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작은도서관 의견은?

[답변]

공옥레 - 지원금을 쓰는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성남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이 되어서 받았는데 작은도서관이 한가지 목적(프로그램 운영비)으로만 사용하기에는 큰 돈이었어요. 꼭 공동주택이 아닌 여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기준을 정해 더 지원해주는게 나올 것 같아요.

오은복 - 풍족하게 잘 쓰고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힘든건 마찬가지로 예요. 그리고 지원받지 을때는 또 다른 고민들로 더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사회자 - 그렇게 되면 많은 활동을 재능기부나 봉사자에게 의존하게 될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오은복 - 지원사업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운 도서관이 더 많지요...

하연서 - 저희 같은 경우 자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꿈도 못꿀 이야기 같아요^^ 도서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나 입대의에서 도서 지원금이 전무해 자체적으로는 도서구입이 안되고 있어 저희의 경우 새 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다량의 신규도서를 도서관별로 회전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책이 부족한 도서관에 신규도서를 일 정기간이라도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질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요즘 유행하는 마을민주주의 관련하여 절차적인 과정시 실제적인 접근 차원에서 질문드릴게요

- 1) 절차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단위에서 민주적 구조는 있는지
- 작은도서관(아파트)에서의 의사결정시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 2) 실질적인 결정에서 개인 이익 vs 전체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인지

[답변]

하연서 - 아니요.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료랑 요청하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 명의 입주 민의 항의에 도서관 운영결과가 바뀌면서도 기존 도서관 자원봉사 자 13분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민주적이지 않 아요.

사회자 -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잇권을 챙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감정의 대 립이 느껴지네요. 아픔널은 어때요?

오은복 - 저희 초기 개관할 때 생각이 나긴 하네요... 저희는 어떠한 결정도 매 주 진행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요.

“공옥례 - 자원봉사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사회자 - 도서관 운영위원은 모두 자원활동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원활

동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오은복 - 자원봉사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죠. 당연히 도서관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시 반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봉사자만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년2회정도 하고 있어요.

공옥례 -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면서 또 이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봉사자 아이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특혜를 누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다독여서 함께 운영하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 - 그런 민원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관심없는 그냥 주민들이지요. 밖에서 보면 당연히 끼리끼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질문]

자발성을 확대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과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오은복 - 봉사자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봉사자의 날을 만들어 밥도 먹고 문화활동을 하고,..

사회자 - 여가 생활을 도서관에서 즐기는 것 같은데요^^

하연서 -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개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된 결과를 체험하게 하면 주인의식을 조금씩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질문]

[대안과 과제 중심으로]

1.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의 위치는 중요 요건중 하나입니다.

* 2007 vs 2013, 2015 차이

* 주민 이용과 관련된 위치성과 연계성 중심으로 대안 (꿈&휴)

각 도서관의 위치를 두고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상렬 - 꿈&휴 작은도서관을 보면, 위치선정의 단점과 공간분포의 장점이 함께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이죠. 13년에 입주했지만, 2007년정도에 설계를 완료한 아파트라서, 그 시기가 커뮤니티 공간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가장자리에 몰아두어서...대각선으로 가장 먼 세대들에서는 500미터이상을 걸어서 와야하는...단지내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단지밖에 있는 현실이죠. 다만,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커뮤니티센터 내부 동선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봐요.

“김상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오은복 - 꿈&휴처럼 처음 입주때부터 작은도서관을 고민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2009년 정도에 판교는 입주를 한곳이 많은데요. 거의 작은도서관이 그냥 작은 공간에 필요 집기를 넣어두고 운영주체가 생기면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운영주체가 없으면 창고로 사용되거나 그런 곳이 많아요.

[질문]

2. 작은도서관 운영모델의 두가지 예를 매뉴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꿈&휴 : 소득주도의 성장과의 연관성, 일자리 창출 효과등 측면

* 아름널 : 지역주민의 사회적 인적자본 연계 모델, 자발성 높음, 단지 특성과 함께 고민

다양한 운영모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두가지 측면만 보았을 때 향후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방향과 연관지어 두 모델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답변]

오은복 - 저희처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경우 주택법이든 조례든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근자를 두는 방식이어야 해요. 판교는 작은 규모의 단지들내 도서관들이 소수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어 몇 분이 그만두면 바로 폐관으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근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송기동 - 꿈&휴 모델의 경우는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기에 상근자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아른널처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곳은 말씀대로 자원봉사자에게든 어쨌든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연서 - 저희 단지의 경우 혼합 단지로서의 차별 의식외에도 단지내 다툼과 민원, 고소, 고발 등이 아직도 빈번한 터라 인건비의 경우, 시급제 직원을 채용하여 발생할 문제, 뭐 예를들면 도서관 관리가 허술하다던지, 직원이 자꾸 바뀔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들을 들어서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자 - 웬지 인건비로 귀결되는 느낌인데요^^ 입대의 회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이야기해봐 주시겠어요?

김상렬 - 물론 아파트마다의 역사와 특성이 달라서 전면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문화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등을 고려하고...음...4년동안 입대의 회장을 역임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인력...여기서 책임자, 실무자는 주민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이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봐요.

“송기동 - 공동주택관리법 악법이네요^^;;; ”

[질문]

아파트공화국 측면에서 바라본 작은도서관은 주택법상 해당 아파트 주민외에 주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파트, 대안은 없을까요?

[답변]

김상렬 -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입주민 과반 동의 절차로 작은도서관 개방이 가능해졌는데요.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천세대면 천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파트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봐요. 현장에서는 주변 아파트들과 공동으로 함께 외부개방을 추진하고, 이런 단지에 지자체는 혜택을 주는 방식의 미시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은복 - 공동주택법으로만 봤을 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면 도서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기본 원칙이 공공성인데 모순적이네요.

송기동 - 사람들은 타단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걸린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타 단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분란

을 일으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악법이네요^^

공옥례 - 삼평동 학습공동체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입대의에서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의결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외부인에겐 아직 도서대출은 안되고 있긴해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니... 뭐, 그래도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하연서 - 몰랐네요. 주택법에 그런 법이 있는줄... 동의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자체가 해당 아파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파트 사립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민외에 모든 관내 주민에게 열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세대 주민수에 비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타 주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 폐쇄공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주민만 사용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자체 비용으로만 도서관을 운영하는게 맞지요.

사회자 - 이게 바로 도서관 입장에서만 아파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주택법을 간과하고 도서관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작부터 들여다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바쁜 일정들로 모이긴 힘들었지만 서로 몰랐던 부분을 많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 입대의 산하 직원 고용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의 시사점

작은도서관 발전 역사는 지역 대중 운동이자 대중 풀뿌리 사업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이런 흐름을 이어받는 운영 방안이 “자생단체” 등에 의한 자원활동가 운영방식이다. 앞서 소개한 아름넬 작은도서관이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꿈&휴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 체계로 편입되어 작은도서관 주류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현재 도서에 관심있는 아파트 주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보편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 입대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가 작은도서관 운영방식의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독자적인 활동에서 단지내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작은도서관으로 변화이다.

여기에 소개된 꿈&휴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이 주는 시사점은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이 독립된 장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체제속에서 함께 호흡한다는 점이다. 2009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관리하에 운영 권한 및 책임 부여했다는 점이다. 즉, 작은도서관을 전체 거주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시비와 장소활용의 갈등을 정리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입대의는 아파트 운영 및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심의 및 의결 기구이다.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현실적 의미는 작은도서관 운영 최종 책임 주체가 입대이라는 해석이다. 즉, “작은도서관을 주관하는 관

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입대이가 연간기준으로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을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에서 운영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입대이의 관련 사업 방향과 예산의 확정은 업무의 혼선과 갈등을 축소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별개로, 입대이가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측면과 주민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입대이가 구체적인 사업 진행 집행을 관여하는 과정이 아니라, 방향 설정과 관련 예산 배정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은 전담 유급직원이 진행하는 구조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은 하되, 간접은 배제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입대의 결정과 책임의 구체적인 형태는 유급 인력 자원 배치와 예산 지원으로 나타난다. 실제 도서관 업무는 도서 입고 및 대출업무,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업무, 마을공동체 사업, 대외 협력등이 도서관에 산적해 있는데, 즉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서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는 제공은 실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실무 책임자는 기본 도서관 사서 실무 능력, 프로그램 기획 능력,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활동, 일반 행정 능력까지 요구한다. 이런 능력은 자원활동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진행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나 여러 명의 봉사(?)가 아닌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기초적인 마을단위(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이고, 노동을 제공하면 정당한 급여를 제공하는 선진사회의 단면이다. 이런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절차는 아파트자체 관리규약에 명문화해야 한다. 명문화 규정은 입대의 제안과 입주민 과반이상의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즉, 추진주체(즉, 입대의)의 명분과 추진력의 기반위에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주민사이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모델이 아파트내 동아리 형태의 운영이라면, 직원형 유급 모델은 마을민주주의 합의에 기초한 운영이

다.

한편,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적절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서 능력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이지만, 아파트의 객관적 조건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스타일리스트를 요구한다. 특히, 직원과 주민간의 협업능력과 공감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 이상을 요구한다. 도서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도서관기반의 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꿈&휴 작은도서관만 보더라도, 도서관 실무 책임자가 커뮤니티센터 실무까지 총괄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직원들을 요구하는 수요 아파트 현장의 요구와 입장에서 적절한 인력 자원 공급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유급 직원으로 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써, 네트워크나 지자체 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벗어나 있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과 구조에 대해 근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꿈&휴 작은도서관 사례처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주민이 참여한 작은도서관 운영 모델의 장점을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할 것인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현상은 NGO나 사회단체등에서 우선 시행한 사업정책들을 정부에서 받아 전면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작은도서관내 자원활동 영역의 재정립과 활동 내용의 확대등을 통해 유급 직원과 자원활동간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직원이 담당하는 기본 관리와 운영외에 생산적인 자원 활동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얼마전 2017년 9월 꿈&휴 작은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 “평화체험통일맞이 꿈의학교” 프로그램중 1박2일 캠프 행사에서 아프리카 원조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보건관련 재단에 근무하는 아파트 한 입주민이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다큐 영화를 함께 학생들과 보면서 평화가

가지는 의미를 토론했다고 한다. 이런 예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활동의 새로운 형태로 보여진다.

참고)성남센트럴타운 작은도서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시 기	보고 및 안건 내용	비 고	
2013년	5월	-3개월 임시운영 전기세 및 수도세는 공용요금으로 납부토록 함 운영비 추후논의 초기 청소작업은 관리사무소에서 논의하기로 함	커뮤니티센터(작은도서관 포함) 개관 준비
	6월	-북카페 및 프로그램실 비품구매 진행건 수의계약으로 18일 입고 예정	북카페-꿈&휴작은 도서관 초기 명칭
	7월	-주말 북카페 이용 자원봉사자 모집후 7월 13일부터 운영계획 -프로그램실, 북카페내 스터디룸 비품구매진행	
	8월	-북카페 대출요구(8월~9월초)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이사, 협동조합간 실무협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센트럴타운협동조합 용역계약 의결 -프로그램실 추가시설 완료 및 북카페 책장 추가 설치 -북카페내 스터디룸2 시설추가 검토 및 탁자구입	
	9월	-성남센트럴타운 협동조합과 커뮤니티센터 용역 계약 진행보고 -커뮤니티센터 추가시설 진행 상황보고	
	10월	-북카페 자원봉사기관 신청현황 및 커뮤니티센터 시설 추가 진행상황 보고 -프로젝터 잡수익에서 지출 의결 -테이블 추가 구매예정	
	11월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관련 매뉴얼 협의 예정	
	12월	-북카페 야간 및 자원봉사기관 현재 진행현황 보고	

2014년	2월	-북카페 이용실적 및 대출현황 보고	
	5월	-커뮤니티센터 운영시간 및 인건비 현실화의 건 북카페 운영시간 평일 오후1시~오후7시 7월 북카페 전담 인력 채용 주민(유료) 봉사자 부분 활용 시급6천원 의결	
	7월	-커뮤니티센터 담당자 구인 인건비 180만원 예산지원 의결	
	9월	-도서관 명칭 변경 북카페 → 꿈&휴 작은도서관 도서관은 공공성이 강함으로 전적으로 공용요금 부과	
2015년	2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꿈&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64,900원	성남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선 정 지자체 지원금 -900만원 지원
	3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꿈&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100,300원(2월) 도서구입 1,000,000원(3월) 꿈&휴 작은도서관 가구 2,749,890원 인문학 강사료 200,000원	
	4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꿈&휴 작은도서관내 스테디룸 6면 도장 1,348,600원 작은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비용 선물 꾸러미 90,000원 전통놀이물품 100,000원 2015년 예산 집행 의결 : 도서구입비 집행 의결 5~12월 매월 균등 구매	
	10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도서량증가에 따른 책장 구입 789,800원	
2016년	1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꿈&휴 도서구입비 및 인건비 지출 : 년8백만원 월 분할하여 도서구입 : 인건비 년 약2,920,000원을 12개월 지출	성남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 지자체 지원 금 -1,300만원 지원

2017년	1월	-잡지출 심의 및 의결 도서관 관련(인건비,도서구입비등) 예산 : 25,451,720원, 12개월 연동하여 지출, 해당월에 따라 지출금액 변동 있을 수 있음	성남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 지자체 지원 금 -1,300만원 지원
-------	----	--	---

(부록) 최근 4년간 꿈&휴 작은도서관 총괄 운영 자료

[일반 운영 현황]

1. 꿈&휴 작은도서관 일주일당 평균 개관일 수 현황

구분	2013년7월이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당 일수	5	5	7	7	7
전년대비 증감		-	2	-	-

※ 1일 4시간이상

2. 꿈&휴 작은도서관 일주일당 평균 개관 시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관시간/주		45	59	66(71)	66(71)
전년대비 증감			14시간	7시간	동일

* 주중 : 10:00~20:00(하절기 21:00), 주말 : 10:00~18:00

3. 꿈&휴 작은도서관 연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인원(명)	자료없음	15,198	18,527	19,848	13,039
전년대비 증감			21% (↑)	7% (↑)	

* 주말 이용자 현황 제외

4. 꿈&휴 작은도서관 계절별 이용자수 현황 (2016년)

구분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
이용자수	4,513명	6,143명	4,607명	4,792명

* 하절기(4~9월) 운영시간(20:00에서 21:00)로 연장

5. 꿈&휴 작은도서관 연간 도서 대출권수 현황 (단위 :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권수		5,496	10,816	11,405	9,936
전년대비 증감	-		96% (↑)	5% (↑)	

6. 꿈&휴 작은도서관 대출여부 및 개인당 최대 도서대출 추이 현황

구분	2013년7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대출여부	×	×(○)	○	○	○
인당 최대 대출권수		2	4	4	4

* 대출시작 : 2014년 8월 시작(최대 대출기간 2주)

[인력 현황]

7. 꿈&휴 작은도서관 상근인력 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1	2	3	3	3

* 주5일 1일 4시간이상 근무자

8. 꿈&휴 작은도서관 전체 인건비 현황

구분	2013년 6월~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4,345,000	11,524,000	23,187,000	25,651,000	28,413,000
전년대비 증감		165% (↑)	101% (↑)	10% (↑)	10% (↑)

9. 꿈&휴 작은도서관 상근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	1	1	1	2

* 사서, 독서관련 교사 자격증

10. 꿈&휴 작은도서관 상근인력 연간 교육 참가시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참가시간			40	108	

11. 꿈&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횟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 여부			○	○	○
활동횟수(년)			9	11	7

12. 꿈&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수 현황(월평균)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명	45명	55명
성인 수			5명	5명	7명
청소년 수				40명	48명
총 봉사시간				102시간	131시간

13. 꿈&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동아리 구성 여부 및 활동 횟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 여부	-	1	2	2	4
활동횟수(년)	-	20	48	44	116

[예산 현황]

14. 꿈&휴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 현황 (단위 :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원)	12,995,000	15,118,000	49,236,000	65,326,600	70,978,300
전년대비 증감		16% (↑)	225% (↑)	32% (↑)	8% (↑)

15. 꿈&휴 작은도서관 수입원 추이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부담	12,995,000	15,118,000	36,116,000	34,726,600	34,918,300
행정기관 보조금	-	-	9,000,000	13,000,000	13,000,000
공모사업 지원금	-	-	4,120,000	17,600,000	23,060,000

16. 꿈&휴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 자부담 비율 (단위 :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예산	12,995,000	15,118,000	49,236,000	65,326,600	70,978,300
자부담 예산	12,995,000	15,118,000	36,116,000	34,726,600	34,918,300
비율	100%	100%	79%	53%	49%

17. 꿈&휴 작은도서관 예산 지출 추이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전체예산	12,995,000	15,118,000	49,236,000	65,326,600	70,978,300
도서구입비	1,000,000	1,649,000	8,949,000	8,536,000	6,338,000
인건비	4,345,000	11,524,000	23,187,000	25,651,000	28,413,000
운영비	7,650,000	1,945,000	12,980,000	13,539,600	13,167,300
공모사업지 원금			4,120,000	17,600,000	23,060,000

18. 꿈&휴 작은도서관 전체 운영비 현황 (단위 : 년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금액	7,650,000	1,945,000	12,980,000	13,539,600	13,167,300
전년대비 증감		-75%	567%	4%	-3%

[도서구입 및 시설물 현황]

19. 꿈&휴 작은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금액	1,000,000	1,649,000	8,949,000	8,536,000	6,338,000
전년대비 증감		64% (↑)	442% (↑)	4% (↓)	

* 도서 및 정기간행물 포함

20. 꿈&휴 작은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장서(권)	2,100	4,899	6,876	8,063	9,755
전년대비 증감			40% (↑)	17% (↑)	

21. 꿈&휴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수집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전년대비 신간증가(권수)	-	1,904)	1,986	1,533	1,199

1) 2014년 구입한 중고도서 포함

22. 꿈&휴 작은도서관 연속간행물 종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간행물	-	2	10	11	10
일간지		-	8	3	3

23. 꿈&휴 작은도서관 컴퓨터등 시설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리자 pc			1	1	1
이용자 pc				1	1
책소독기			1	1	1

[독서문화 프로그램 현황]

24. 꿈&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프로그램 수	2	13	22	46	41
전년대비 증감		650%	69%	109%	

25. 꿈&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횟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현재
실시 횟수		792	1356	1619	1,194
전년대비 증감			71%	19%	

26. 꿈&휴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지원대비 선정 현황 및 지원 예산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수			8	7	5
선정 수	-		5	6	4
지원 예산			4,120,000	17,600,000	23,060,000

* 보조금사업, 마을공동체, 동아리, 마을연구, 멘토링 포함

Part IV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향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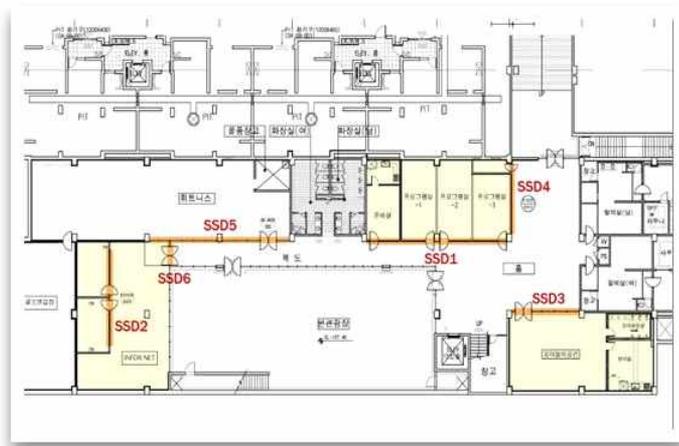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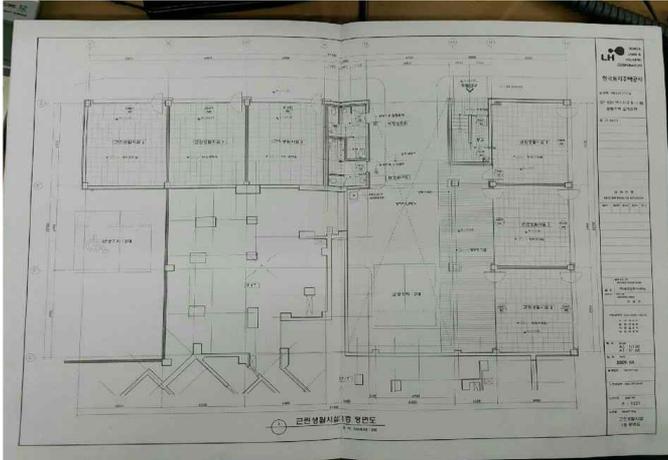
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공간(시설) 구축 방향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은 500세대이상의 신규 아파트들과 기존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 후자의 경우는 유휴공간에 조성하여 다른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는데 한계가 분명하여 차라리 내부 시설(인테리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신규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조성시 작은도서관 위치 선정의 중요성과 방안 모색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조성된 작은도서관 위치를 보면, 위치 선정에 따라 입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주민들의 동선과 상관없이 고립된 위치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잘 된다고 해도 결국 이용자들 위주, 즉 동아리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입주민 누구나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존재하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한 부분 시설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아파트 주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 아파트를 참고하여 최대한 설계 단계나 경미한 용도변경을 건설사에 요청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내부 시설 투자 성격이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이 진정한 주민공동시설의 핵심 요소이다. 앞서 설명한 꿈&휴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4-2). 건설사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여, 입주전 대책모임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필요한 이유는 설계와 입주시점간의 최소 3년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한번 조성하면 행정적 변경 처리의 곤란과 만들어진 시설을 고쳐야하는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그림 4-1〉 센트럴타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전, 후 설계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전 한기호(2012년)씨는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만한 도서로 초기 장서가 꾸러지려면 건설회사가 주민 공동시설 설계 시점부터 지자체의 도서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초나 광역 지자체의 도

서관 담당부서가 건설회사와의 직접적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보면,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모임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관련 지자체 담당자는 이런 입주 예정 모임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모범 사례나 추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관련 지자체 담당자는 LH공사나 SH공사등 공공건설사부터 협의테이블을 구성(지자체내 전체 담당부서 존재)하여 입주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대책중 하나이다. 현재 이 부분은 정교한 민·관 거버넌스 영역으로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지자체는 기존 3가지 조건(면적, 장서, 열람석)만의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인허가 중심의 행정보다 서비스중심의 지원 행정으로 도서관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요즘 민영 아파트는 물론이고 LH공사등의 공공 아파트들도 작은도서관 내부를 조성해 준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가니, 최대한 기본 사양을 유지하려고 한다. 2016년 공급해준 내역은 성남여수지구 s아파트 표 4-1와 같다. 우선 LH공사와 같은 공공건설사와 협약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내부 조성에 관한 지자체별 아파트 작은도서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받은 책꽂이나 열람석 의자등은 실제 편의성이 많이 떨어진다.

〈표 4-1〉 2016년 LH공사 지원 목록

품 목	수 량
도 서	1,000만원 상당
4인용 테이블	6개
의 자	24개
컴퓨터	1대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제안

일반적인 자생단체 중심의 운영 방안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아파트 운영구조에 편입하는 방안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입대의 책임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파트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단위는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대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살펴보면, 입대의 의결사항과 주민편의시설 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편의시설이다. 반면, 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등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헬스장, 골프연습장등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시설이다. 실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중 극히 일부는 교육적인 목적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외피로 포장하려는 경우도 보았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점유 공간은 작은도서관이 유일하다. 아파트에서 마을만들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뼈아픈 지점이다. 현재 사정상 그리고 필요하지 않아 이용도 떨어질 뿐이지 작은도서관은 전체 주민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기타 사립 작은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기에 미취학 아동중심의 이런저런 프로그램들과 유아 도서만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름을 ○○○어린이도서관이나 ○○○유아도서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성인(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인식하고 실제 방문하여 알려지는 확산 반응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초기 일정 비율로 성인 및 청소년 도서 구비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앞서 소개한 꿈&휴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작은도서관 이해당사자, 입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앞서 소개한 성남센트럴타운 일년 예산은 약 30억원정도이다. 시간제 노동자 포함 전체 직원은 40여명, 입주민은 3,500~3,700명이 거주한다. 입주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을 위주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계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보고 싶은 사안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핵심이다.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에서 주민 전체 투표를 제외하고(사실 형식적이기도 함),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거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감사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당연히 아파트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일차적으로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아파트 입대의와의 관계가 협력적이거나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는데, 아파트 구조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다. 실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단위와 커뮤니티센터내 일부 공간 실무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수평적인지 의문(?)이다. 입대의 구성원들의 잘못된 결정은 외부 행정관청의 감사나 민형사상 책임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민들중에서 작은 도서관 이해 당사자이거나 우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입대의 회장이나 동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의 기본 전제이다. 즉, 직원과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노력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다. 법적 차치 조직인 입대의 구성원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편, 입대이가 인정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최대치가 아마도 일부 구성원들의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모양새이다. 즉, 입대이는 귀찮고 관리사무소는 운영할 근거가 없으니 주민들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식이 투영되는 방식인데, 아파트 관리구조상 2년마다 구성되는 입대이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불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동 차원을 넘어 아파트 관리 체계에서 도서관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2) 전담 인력 확보

아파트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내 전담 인력의 확보는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 전담인력의 경우 열정페이, 자원활동가나 재능기부 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전담인력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선 아파트 내부적으로 관리영역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즉 주민공동시설중 하나인 아파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를 통한 입주민 서비스 향상, 대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나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아파트 관리 인력의 확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는 단지 수도·전기·난방의 시설관리와 관리비 부과·징수하는 일반관리에서 주민공동체 및 화합측면을 강조하는 커뮤니티센터(영역)가 신설되고 확대되고 있다. 결국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조직이나 관리사무소내 직영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전담인력 고용에 따른 관리

비 상승 부담의 우려와 입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인한 운영이 점점을 차지하면서 아파트 노인정처럼 운영하는 구조로 귀결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센터(아파트 작은도서관 포함)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선발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이다.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커뮤니티센터의 다른 부분-운동이나 강의-등은 실비 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반면, 작은도서관은 전액 지원 구조만이 가능하다. 예산과 더불어 인력 구성은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합의 과정도 가능하겠지만, 입대의의 강력한 추진이 오히려 용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실제 도서관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입주민들의 자부심들이 결합되면 강력한 지지자들로 전환된다. 입주민들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가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나 도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 아파트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짚어볼 것이 직원으로서 “입주민”들의 적합성인데, 입주민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하지만, 직원과 입주민사이의 정체성 혼란과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민원제기를 당하는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다면 입주민의 100가지이상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외부 인력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의 총괄 책임자를 작은도서관 책임자가 겸임하거나 최소한 우호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며,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작은도서관은 결국 후순위로 밀린다.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은 작은도서관의 실제 구체적인 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도서 구입, 각종 공모사업, 일상 사업, 자원활동가등의 조직사업, 연대사업 등을 고민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입대의와 전담인력(조직포함)간의 역할분담과 권한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즉, 물론 아파트에 지금 집행 절차가 있지만, 작은도서관 전문인력에 실무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 상무이사나 시민단체의 사무국장과 같은 권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통 채널로 아파트 입대의

조직내 커뮤니티이사(공동체활성화이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입대이에 보고 하는 형식을 추천한다. 결국 명문화와 더불어 실제 마을 민주주의 역량 수준이 소통과 협력의 질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여건상 위와 같은 방안이 어렵다면, 또 다른 전담인력 확보 방안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 인력 보조사업이다. 소위 “마중물”사업의 성격으로 작은도서관 등록한이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도서관 셋팅과 운영 노하우 지원, 프로그램 연대 및 공모 사업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SH공사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경기도 '도민사서 제도'이다. '도민사서 제도'는 관련 자격이나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서로 고용하여 선정된 민간 작은도서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민사서는 2인 1조로 일하면서 주 3일 월 60시간 정도를 일하고 4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급여수준이나 대우가 낮아 한계가 있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아파트도서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싶다(한기수, 2012). 지역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역할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중간지원조직 성격인 네트워크가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각자도생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연대 틀이 형성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은 그림 4-2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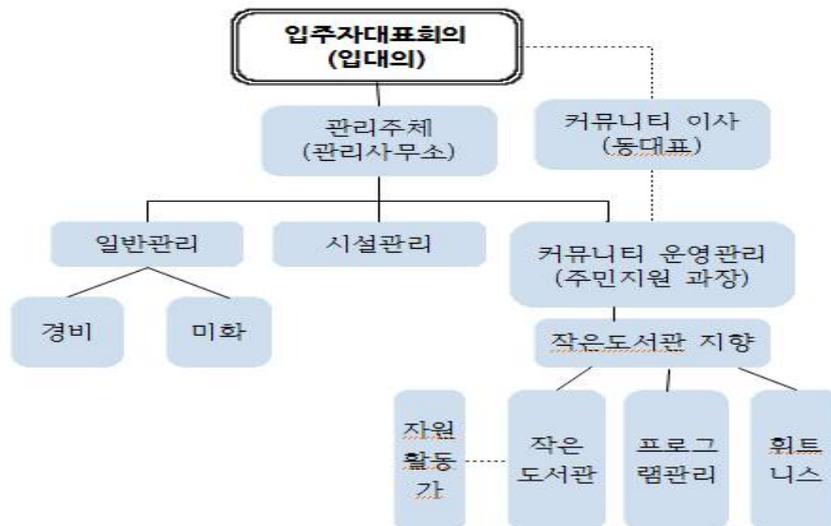
3) 주민 참여: 자원활동가 및 동아리 참여

여기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운동 차원이 아닌 아파트 주류 활동으로서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 많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자원활동가 중심 운영보다는 입대이-전담조직(인력)-자원활동(봉사)가 사이의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활동(봉사)가

들은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성인들은 낮시간대 시간이 되는 입주민들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입주민들로 구성되며 청소년은 단지내·외 청소년들과 청소년 수련관등을 통해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활동으로 모이게 된다.

자원활동(봉사)가의 특징은 전담인력에 준하는 책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원활동(봉사)가의 기본은 “자발성”이다. 작은도서관의 방향과 다르지 않으면, 본인들의 시간과 여력에 맞게 활동을 한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정도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활동가들을 행사나 사업등에 동원하는 관행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즐겁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게 조성해야 한다.

〈그림 4-3〉 아파트 작은도서관 유급 직원 운영 모델 전체 조직도



또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도 도서관 청소나 책소독등의 일상적인 일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형태의 활동을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이 기획해야 한다. 단지내 특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성향을 고민하

면서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들면, 보드게임이나 책놀이, 영어책 읽어주기, 신문스크랩등이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독서동아리 구성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민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방향과 속도를 쥐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다. 동아리 만들거나 운영 지원은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의 대표적인 조직사업이자 마을공동체 활동이다. 그 내용도 과유불급하면 안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능중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4) 민주적 운영 : 운영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활동을 개방하고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 운영 원리를 따라야 한다. 솔직히 형식적인 운영도 많이 존재한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회의를 위한 회의도 많은 것이 작은도서관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효율을 극대화해야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속적인 민주적인 운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에서 대부분 절차적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민주적 운영의 핵심은 “명분”이다. 명분과 상관없는 어떠한 사업이나 강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회의 공고 및 회의 진행, 그리고 결과 보고가 정당성 확보의 전부가 아니다. 실제 그렇다고 해도 왜 각종 행사 등에 입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순간 행사를 위한 행사, 사업을 위한 사업, 매년 그 시기에 하는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다보면 전도가 본말이 된다. 관료주의의 병폐가 그대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이다.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과정은 입대의 동대표(커뮤니티이사), 전담인력,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다. 도서관 실무교육보다 기본 소양교육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극히 일부의 자원활동가의 경우 내 아이들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옛날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었던 부녀회와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공적 공간의 사적 전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피해야할 첫 번째 사항이다.

절차적으로는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도서선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니면, 연도별 사업 및 운영방향을 정할 때(예를 들면, 15년 유아 및 어린이중심, 17년 청소년중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성남센트럴타운의 경우, 도서 선정은 도서관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논술전문가가 도서를 추천하기도 한다. 주민 참여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위원회 구성에서 기본 원칙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전담사서와 자원봉사자 대표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입대의 동대표와 시의원,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지역 명망가 등으로 구성하자고 제안까지 한다(한기수, 2012). 이런 주장에 대해, 지역의 명망가들은 제외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참여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활성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예를 들면, 자기 홍보)등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적으로 역량있고 관심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정치인들이 참여하면, 현재 정치 구조상 일반 입주민들은 함께 섞이지 않는다. 이것은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이다.

5) 재원확보 방안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담인력과 재원확보는 쌍두마차이다. 재원확보 방안은 크게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이 있다. 자체 재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 재원이 나온다.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와 아파트의 소유하거나 관리하면서 생기는 기타 잡수익이다. 재산 소유 크기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관리비 증액은 어렵고, 입대주의 강력한 결정과 소신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재원은 알뜰장터 사용료나 광고수익등의 잡수익에서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그동안 관리비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됨과 많은 아파트 조성사업등에 따라 잡수익도 관리비에 준하게 회계상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 제63조). 즉, 입대주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입대주의가 잡수익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남센트럴타운 예산안 수립시 잡수익 지출조항에 보면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지정하였고, 그 내용중에 “6. 커뮤니티(작은도서관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성남센트럴타운의 특징은 관리규약에 폭넓게 명문화 하였지만, 지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매년 필요한 재원이 변경되는데, 매년 입대주의가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자체 재정 확보는 2010년 9월에 개정된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33조에는 아파트 잡수입의 40% 범위 이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준칙에서 표준안을 제시하면 대부분을 개별 아파트 관리 규약에 포함한다. 이 규약을 보면 단지내 입주민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민 상호간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표준관리 규약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많이 있다. 이 규정은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식으로 현재 아파트의 입주민 이해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나 실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으로 법적 자치 조직인 입대의에 맞서는 “작은도서관” 관련 조직이나 단체로 지목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아파트 주도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법률 규정으로 부녀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사하던 잡수의 징수권과 집행권을 회수하여 입대의로 일원화하였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은 유일하게 일정 공간을 일상적으로 차지하고 주민들이 교류하는 장소이다. 아파트 밑바닥 민심을 대변하는 작은도서관이 입대의 방향을 지지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는데, 지원이 그 부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항상 긴장 구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입대의와의 협력 관계는 입주민들과 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은 향후 심층적인 추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일차적인 변수이다. 이번 공동체활성화단체를 통한 작은도서관 지원 규정은 관리사무소내 직원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의 방향임을 제안드리고자 한다.

외부 재원을 조달하거나 지원받는 형태로는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문화재단, 평생학습원 그리고 청소년재단등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기업들의 CSR이나 개인적인 후원은 제외한다. 실제 계획에 따른 현금 지원과 인력 파견 형태이다. 총괄적인 보조금 사업에서는 누누이 지적되듯이 인건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도서관 전담인력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보조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누가 기획하고 작성하고 관리하고 진행하고 정산하는가? 결국 핵심은 전담 인력의 확보이다. 자원활동가의 선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결국 공직사회나 공공기관 보여주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모사업 진행중 마을축제만 6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파트 작은도서관 정상화의 핵심은 “전담 인력의 확보“이다. 전담 인력 지원에 외부 재원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중 예산안 마련과 잡수의 지출 명문화, 참고자료 PartⅣ 참조 ...160p)

3. 법률 및 행정기관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법률상 미비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아파트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방향을 바라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및 방향

5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작은도서관 등록이후 운영은 철저히 입주민들의 몫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업적이든 상관없이 계속 공립 작은도서관을 신설하고 있다. 민간 운영은 힘들어 고전하고 있는데, 공공은 왜 계속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궁금하다. 500세대이상 대표적인 주민공동시설중 하나가 어린이집이 있다. 예전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도 일반 상가처럼 분양했는데, 지금은 주민공동시설중 하나로 편입되어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를 보면, 제2항『13.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과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1항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문화하였다. 정리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서 별도로 관리규약에 처리하도록 해두었다. 왜냐하면, 단지내 입주민뿐만아니라 단지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도 아파트내 어린이집에 추진되고 있다(그림 4-3). 그리고 최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나눔(공유)의 필요성에 제기된 주차장 공간 또한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1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그림 4-3〉 센트럴타운 단지내 국, 공립 어린이집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진흥법등에 의해 문화관광체육부가 관할 행정기관이다. 2016년말 현재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중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전체의 32.1%인 1,450개로서, 500세대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논의와 더불어, 지자체나 민간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와 같이, 작은도서관 현황 및 논리를 제시하면서 부처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신규 공립작은도서관 신설에 치중하기 보다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상 별도 공간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이 위탁한 작은도서관은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공공 작은도서관은 예산과 인력등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마을 거점으로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 현장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택과 집중은 세대가 적은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여 운영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입주주민만을 위한 아파트 공간을 담의 경계를 허무는 개방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올해(2017년) 신설된 현재 공공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2에 의하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하도록 되었는데,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민 10%이상의 제안으로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은 헬스장등 운동시설의 운영 적자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입주민들의 내부 반발 없이 무난하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사실 작은도서관의 공공위탁이라고 생각한다. 입주민들의 내부 만족도와 공간의 장기무상계약(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0년)에 따른 운영 지원이 외부인 이용을 조건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 아파트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파트 단지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만든 자료가 10년 만에 공동주택관리법 29조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포함되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공동주택관리법 29조3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공공이나 사립 위탁 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제14조, 제19조, 제29조의 2, 제29조의 3, 참고자료 Part IV 참조...160~163p)

2) 도서관 관련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방식 재편

- 공간 조성 사업 vs 운영 지원 사업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사업진흥법(법률 제11316호, 2012년 제정)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운동 차원의 성과와 활동 주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법 제정 이전과 이후에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봐야하는데,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초기 조성단계와 정상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는 운영단계이다. 시기별로 보면, 조성단계 지원은 작은도서관 등록전부터 최대 2년 기간까지, 운영단계 지원은 등록 만2년 이후부터이다.

조성단계의 지원 방향은 (내부)시설-인력-예산의 패키지로 가야 운영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후 평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경우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작은도서관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전산화, 자료, 서가, 집기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경기도, 2015). 이번 지원을 받은 성남여수지구 산들마을 푸른숲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이후 오픈은 했으나 결국 임대와의 갈등등으로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으며, 안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Part3, 간담회 참조). 결국 물리적인 공간조성만으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안정화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공간 조성사업이 지자체 사업홍보에는 효과적인 수단일지 모르지만, 초기 안정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약 2년정도의 인력과 예산 지원으로 주변지역의 작은도서관 거점 역할을 고민하여야 한다. 1명의 전담 인력 파견이나 지원을 통한 민주적 운영의 토대 마련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대상 아파트의 임대와의 전략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안정화 주요 변수는 아파트 임대이기때문에, 계약단계의 전략적 협력과 더불어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인력의 가장 문제점은 아파트 전체속에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아파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정상화되는 경로중 하나는 전담인력의 전체적인 시각과 유연한 소통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SH공사 위탁사업에서도 보면, 전담인력의 아파트 이해도 부족이 자족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지자체의 초기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연도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현장속으로 들어가 2년정도 집중하여 공간조성부터 인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과정로 확대해야 한다.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과정이 전담인력과 예산투여의 핵심이다. 특히 이 시기에 지자체는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도록 도움주어야 한다. 관련 사업의 예시는 표 4-2와 같다.

〈표 4-2〉 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스타트업 사업(예시)

<p>1.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신도시 및 대규모 지구단위 계획상 신규 아파트(공동주택) 확대 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지역별 광고, 위례, 제2동탄, 다산신도시, 하남미사공공주택단지등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공간 및 시설(도서) 구비는 공급 규칙상 강제규정 - 작은도서관은 초기 입주민 대상 마을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 <p>2. 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간이 있는 작은도서관 등록이전 (신규)단지거나 등록 6개월 미만단지 - 규모 : 시도별 10개 지원사업 - 내용 : 내부 시설 조성 + 작은도서관 활동가 인력 파견 지원 사업 - 예산 :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당(3천만원) : 조성비(1천만원) + 인건비 (1800만원) + 운영비(2백원)

- * 인건비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작은도서관 셋팅 및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에게 지급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과 관계 필요)

- 지원 조건

- * 단지별 향후 운영 계획 제출
- * 입대이나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 (매칭 개념)

3.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을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칭)따복아파트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활용
- 작은도서관을 단지내 문화공간이거나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초기 정착
- 아파트 단지 초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자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민관 협치모델 구축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존재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자리를 잡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수의 자발적인 사람들이 업무나 사업등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결국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지자체의 운영 지원사업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작가지원사업, 멘토사업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사업들이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서의 마을공동체관련 사업은 경기도 네트워크(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출발이 다른 관계로 별도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라는 공간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 단위계획이나 신도시급에서는 단지별로 구성되어 있다. 꿈&휴가 속한 성남여수지구만해도, 3개단지 약 2,500여세대가 거주한다. 3개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하는 운영 모델들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표 4-3). 신도시급의 경우 10개이상의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가 지

역별로 있지만 형태별, 특히 아파트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출범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고민과는 고민의 초점이 다르다고 본다. 일반 작은도서관은 운영비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의 문제가 있지만,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건설사나 임대와의 관계가 훨씬 고민이다.

〈표 4-3〉 지역단위 아파트 작은도서관 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 (예시)

<p>1.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아파트)별로 나누어진 작은도서관 입주민 및 활동가 공동 사업 필요 * 생활단위 작은도서관별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 예를들면, 초등학교 학군별 단지 작은도서관 연대 모임 - 구별짓기 집단문화 극복을 위한 단초 마련 <p>2.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아닌 지역단위로 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 (30곳) - 예산 : 1억원 - 내용 : 아파트 단지별로 3-4개 묶쳐 작은도서관 연대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협력 프로그램 사업 : 공동기획, 공동주관, 순회 강연등 2) 작은도서관 공동주관 책 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지역단위 연대한 3~5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협의회- 행정기관 <p>3.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단위 아파트 작은도서관만의 아닌 주변 단지 작은도서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화합 - 개별단위 작은도서관 열악한(?) 역량 극복 및 중규모 조직 신설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작은도서관협의회의 지원 역할 확대 가능

3)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이 글의 전체 기조는 작은도서관에서 아파트를 보지 말고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라고 강조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관점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결국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대의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활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고민은 문화관광체육부가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는 도서관 정책과가 공동주택과와, 기초지자체는 평생학습원이 공동주택과와 협력하여 설득하여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지원없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동아리 공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체 입주민의 공간이나 일부 주민들의 자족적 공간이냐는 어떻게 현장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예시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4〉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의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예시)

1. 취지

-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음.
- 일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의 탄생배경, 운영 성격이 상이
 - *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공공재이자 공유제의 성격인 주민공동시설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 및 관리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연계없이 지속가능할 수 없는 구조

2. 사업내용

- 대상 : 입대의 (회장이나 공동체활성화이사),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 교육 : 거점 지역별 기본 직무교육시 포함하거나 “공동주택과”와 공동 진행
* 입대의 연합회나 주택관리사협회와 MOU
- 예산 : 5천만원
- 교육내용
 -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작은도서관 이해
 - 2) 합리적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역할
 - 3)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모범 사례
 - 4) 경기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및 방향 소개
* 아파트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시 항목 신설 고려

3. 기대효과

- 확대일로에 있는 공동주택형 작은도서관 맞춤형 교육 사업
-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내 작은도서관 상호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모델 기반 조성
- 선택적 공간에서 보편적인 공간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정상화 기초

*****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공동공동시설 관련 제 규정 및 해석 참조 *****

4) 대규모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산정 방식 개선

지자체 보조금은 전년도 활동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조금이 전년도 사업 활성화 정도의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라면, 초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공공성격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꿈&휴의 경우, 13년 7월 등록이후 지자체 보조금(경기도, 성남시 매칭 지원보조금)은 14년 B등급, 15년부터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 전체 작은도서관중 1등에 해당된다(표 4-5).

〈표 4-5〉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평가 결과 - 꿈&휴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년도	구 분	지 원
2014년	우 수	700만원 (민간경상: 490만원/ 민간자본: 210만원)
2015년	최우수	1,300만원 (민간경상 910만원 / 법정운영 130만원 / 민간자본 260만원)
2016년	최우수	1,300만원 (민간경상 910만원 / 법정운영 130만원 / 민간자본 260만원)

사실 500세대정도의 단지와 1000세대이상 대단지는 평가지표에서 큰 단지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도서수, 대출수, 회원수등 절대적인 수량보다는 세대당으로 환산하면 평가 지표 산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지표의 현실화와 지원의 평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한도 제도등을 도입하여 지자체 보조금이 연속하여 한 곳에 쏠림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했으면 한다.

**Part V 아파트 작은도서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형식은 Q&A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일반적인 고민사항, 운영방안, 관리 처리 방안, 연대 및 협의 방향 그리고 사업 방향을 실제 항목별로 정리하였는데, 법령과 행정 해석에 기초한 사실과 꿈&휴 작은도서관 운영의 경험사례를 추가하였음을 밝혀둔다.

1. 외부인도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명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아파트를 관리관할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주민들이 비용, 즉 관리비를 부담하는 공간은 입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서, 당연히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경우는 외부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2017년 1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항(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이 신설되어 절차에 따라 주민동의를 얻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들이나 지자체별로 외부인 이용여부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만, 소수의 민원 소지가 있는 결정을 입주민의 자율을 명분으로 떠넘기는 조항이란 비판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강좌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단지만의 입주민만이 아니라 장소에 해당하는 아파트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부인포함 전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아파트에서 노인정과 작은도서관 차이가 무엇일까요?

50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노인정과 작은도서관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정은 일반적으로 65세이상 연령의 노인들이 평일 주간 시간에서 여가생활 및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지요. 즉, 일정 연령대 이상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체적인 회칙과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노인회와 지자체 복지과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전체 입주민 전체 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파트 세대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동체-독서문화 거점 역할과 아동 보육기능-가 형성되도록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별로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 있고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동네 사립 작은도서관 무엇이 다른가요?

대부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규정에 따라 건설사가 만든다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종교단체등이 스스로 자체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립동기는 규정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진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므로 시민운동의 공간이 아닌 생활 자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열람석 탁자 및 의자, 도서, 컴퓨터, 책꽂이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독서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파트에서 독서실은 중고생(주로 고등학생)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용하고, 자리에 관한 독점권한을 부여하여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물론, 아파

트가 영리조직이 아니기에, 사실 독서실보다 20%정도 내외의 가격으로 운영하고, 입소 경쟁률이 높은 경우는 사용료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실은 운영여부에 따라 학부모간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뿐더러 일부의 경우는 부모들이 총무 역할을 담당하고 간식까지 챙기기도 합니다.

5.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동네 놀이방과 무엇이 다를까요?

미취학 아동이 많은 세대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맞벌이부부들의 지역 아동센터 기능을 담당합니다. 문방구등 아파트 단지 주변의 자영업들이 없어지는 추세에서 작은도서관의 단지내의 아동 안전공간으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들과 시간대별로 보완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학원을 다녀온 이후에 부모가 퇴근하기전까지 작은도서관은 안전한 장소이고, 편한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도서관 담당자는 상호 연락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며 실제 아파트내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단지내 아동을 위한 순기능을 담당할지라도 특정시간대나 특정시간(방학등)가 집중되지요. 나머지는 다른 입주민들을 위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오전시간대는 주부등의 성인이, 오후에는 학원가기전 청소년들이 쉬고 책을 읽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장소로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세대나 특정인물들의 전유물처럼 작은도서관이 되면 다양성도 사라지고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도 부족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6. 공공도서관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공공도서관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차이는 규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대상인구(명)	시 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규모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련하여 요즘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2가지로 택지개발지구이거나 신도시에서 LH공사 같은 시행사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 채납을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10년대 초반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 부담이라서 환영일색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서관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계획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로 공공도서관 관철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10곳과 공공도서관 1곳을 두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공공도서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 숲사이에 종합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7. 아파트 작은도서관 사용 전기요금은 누가 납부하나요?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차이중 하나가 임차료 부분입니다

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이기에 임차료 부담이 없고, 전기요금등의 관리비가 매월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전기요금 부담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아파트 직영인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공용전기로서 주민들 전체 관리비에서 부담합니다(그림 참고). 반면,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등록해 임대와의결을 통해 일정금액(예,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아 납부합니다.

<참고> 관리비 부과내역서내 공동전기요금 내역

◆ 공동전기 사용 내역(kwh) :

사 용 내 용	전년동월사용량	전월 사용량	당월 사용량
산 업 용	9,934	2,856	3,275
가 로 등	4,407	4,568	4,554
커 뮤 니 티 센 터	5,465	5,946	4,247
주 민 지 원 센 터	4,522	4,967	4,343
꿈 & 휴 도 서 관	885	886	667
경 비 실	4,721	5,202	4,702
지 하 주 차 장 등 기타	79,527	51,301	60,758

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일까요?

2016년 꿈&휴 작은도서관에서 6세 아이가 문틈에 손을 끼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ㅈ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사고는 누가 최종 책임자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63조 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만약 위와 같은 인사 사고나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 경험을 했거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리주체 책임자(관리소장)들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주관 행사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책임자로서 출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결국 책임은 본인 자신이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누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든 상관없이 관리주체는 안전에 최대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은 누구 임명하거나 선출하나요?

초기에 작은도서관 등록에 기여하는 분들이 도서관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 운영규정등에 따라 선출하는데, 대체로 추대형식으로 선출됩니다. 작은도서관의 실무를 책임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도 따라야 하는 자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의 성격도 한 몫을 한다고 봐야하지요. 실제 한번 관장에 선출되면 계속 맡는 이유가 작은도서관이 놓여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한 몫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내부적인 정서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장의 자부심은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간 자원봉사자들, 직원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들에서 임대와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관장 임명권등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의 관련 규정, 외부인 도서관 이용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 2항 참조)을 명확히 하고, 특히,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도 회계 처리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회계 원칙이나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면, 인사문제등의 빌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0.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은 누가 맡나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록증에서 임대자가 대표자이면 임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이면 관리소장이 당연직 도서관장이 됩니다. 자생단체로 운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호선이든 투표 절차를 걸쳐 관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관장은 일반적으로 명예직이고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일부, 공직선거 경력관리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1.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급여를 받는지요?

일단 급여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자원봉사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장의 명예직과 부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분들이 해당되며 급여 여부는 철저히 단지 사정과 운영형태에 따라 천양지차입니다.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형태로 운영되는 아파트에서는 전체 직원급여 테이블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는 시급단위로 계산하고 일정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등이 지급됩니다. 꿈&휴의 경우 책임자급 직원 급여는 매월 2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12. 아파트 작은도서관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서관 중심의 사서 역할인지, 마을공동체의 활동가 역할인지,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인지, 문화활동의 공간인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지 조건과 시기별로 요구되는 전문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여 정상화하기 이전까지의 단계와 정상화이후의 단계에 주요 활동도 다르다고 봅니다.

직원의 전문성은 지자체나 네트워크의 소양교육 및 실무교육이 실속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소양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작은도서관의 역할등을 고민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동네 주민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따뜻한 배려와 전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북큐레이터의 자질은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원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원활동 유형은 연령대로 성인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활동에 따라, 재능기부형과 행정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평소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하여 성인들이 도서관에 이런저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점수와 연계된 활동들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체능의 강사 활동이나 어린이들의 책읽어주기등의 재능기부가 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1000세대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작은 사회입니다. 자원활동의 유형도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꿈&휴에서 진행하는 평화체험통일맞이 꿈의학교에서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주민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가서 아프리카의 폭력과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축제에서 선뜻 나서서 실무지원을 나서는 주민들도 있었지요. 자원활동은 본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4. 관리비등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재정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입대의 책임하에 두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를 통해 예산 확정 및 재정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입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관리비와 아파트 영업외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잡수익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리규약에 명문화하여 당연히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공간이라는 입주민사이의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자생단체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공동체활성화단체로 등록한이후 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이 방법을 통해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모든 경우에 모든 의사결정은 “입대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파트 재정지원의 핵심은 입대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5.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는 누가 선정할까요?

개인이나 단체 기증이나 직접 신규 구입을 통해 도서를 마련합니다. 도서관마다 출간된지 5년이하 도서만 기증을 받는다면 기준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임무중 하나가 우수한 양질의 지역 맞춤형 도서를 구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과 도서 선정의 전문성이 결합된 도서 선정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본 원칙위에서 도서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6.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나 정기간행물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나 정기간행물은 결국 “도서“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도서를 선정하느냐는 작은도서관의 수준과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다만, 정량화하기 어려운 측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과 도서선정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민주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 관리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단지내 게시판등에 홍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절차는 철저히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꿈&휴의 도서선정 방식(년 1000만원 정도)을 소개합니다.

〈참고〉 꿈&휴 도서 선정 기본 원칙

도서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구입하고 있다.

1. 연령별 : 유아(15%)/아동(20%)/청소년(20%)/성인(50%)
2. 선정 주체 : 신청자(25%)/ 신문등(25%)/ 온라인서점등 추천(25%)/ 선정위 추천(25%)
 - 1) 신청자 상한 제한 필요 : 인당 년 5권 제한하고 있다.
 - 2) 매주 주간지 및 일간지 추천도서 리스트화 : 한겨레, 중앙일보, 시사인, 한겨레21, 시네21등 (정기 구독 일간지 및 잡지)
 - 3) 온라인 서점 : 온라인 주간편집회의 선정 도서 및 베스트/스테디 셀러 도서, 기관 추천 도서(국립중앙도서관/책따세/자연드림/도서추천방송등)
 - 4) 선정위원회 추천: 기획 도서물(평화/생태/법률/여성/통일/환경/노동등)등
3. 최종 : 도서선정위원회(직원, 실무자, 유아-아동담당, 청소년담당, 성인담당) 최종 선정

17.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왜 읽을만한 성인도서가 없을까요?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그림책 시장이 활성화된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상 어린이와 주부들을 함께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모임들이 특화되기에 작은도서관 규모가 안정맞춤이고, 주변에 도서 및 문화생활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요자들이 모이게 만든 내부 동력입니다. 반면 성인들은 작은도서관 구성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간을 돌아봅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특성상 일반 직장인들의 직주분리 현상이 일반적이라서 반응시간에 어린이와 차이는 불가피하지요. 따라서 성인이 많지 않거나 대출이 적다고 해서 성인대상 기본 도서들을 등한시하면 특정 세대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 선정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8. 우리아파트 도서관보다 옆단지 아파트 도서관은 왜 책을 더 많이 사요?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은 자체 재원과 외부 재원(보조금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은 얼마나 아파트에서 재원을 투입하느냐 차이인데, 주변 아파트를 보면 년단위 자체 도서 구입비가 0원에서 8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성남시는 지원사업으로 년4회 도서를 추천받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지식의 창고인 도서가 정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서관은 중심에 도서가 있는데, 신규 도서 공급이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9.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동사무소) 프로그램이 동일한가요?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운동, 취미, 교육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강사 인건비(자원봉사료로 칭함)는 지자체에서, 이용료는 관리비등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저렴한 강좌이며, 프로그램의 출발 자체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음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특강, 장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거나 실비(재료비)를 받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물론 독서관련 특화 프로그램 - 작가초청, 필사모임, 낭독 과정, 글쓰기 강좌- 들은 도서관에서 특화한 프로그램들이지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도 강좌가 세

분화되고 특화됨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유상 강의 프로그램 불법 아닌가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행정서류로서 지자체의 등록에 따른 “도서관등록증”과 작은도서관이 거래를 위해 필요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학원법관련)와 부가가치세가 면제조건은 아래 조건과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습 행위를 할 수 있어서, 학원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 1항에 의하면,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대상 프로그램들의 모든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결친 경우, 법률적으로는 주민대상 프로그램들은 비영리적으로 간주되며, 내용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민 강좌는 입대의 의결등의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거치

면 일반 학교나 도서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등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강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원법 법규 위반 문제는 입대의 의결 절차로 학원법 규정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부가세 10% 쟁점인데, 2009년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자료로서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면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질의 응답 자료

예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814, 2009.12.11.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과세 여부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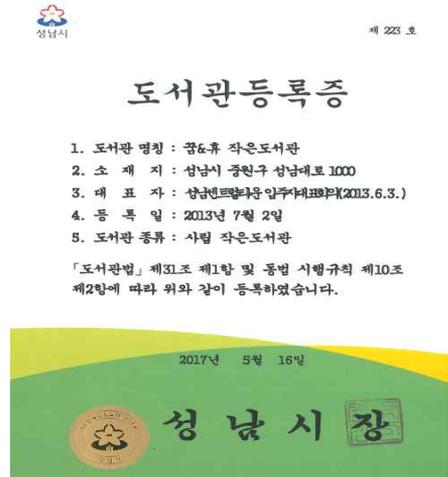
21.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행정적인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면적, 열람좌석수, 도석권수등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지자체 관할부서에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등의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활동을 위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체 형식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그림 참고)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기도 하며 작은도

서관이 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관련된 인증도 해줍니다. 이밖에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문화예술활동등의 부분별로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관련 인증이나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 작은도서관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22.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마다 꼭 있어야 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50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공간이 설계단계부터 구획이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창고등으로 사용하는등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할 의지가 없는 작은도서관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기타 주민 시설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 용도 변경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단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용도변경 추진을 검토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 입주자(소유자)들의 75%나 80% 동의

로 가능합니다.

23.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가치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치 평가는 입지, 교통, 환경, 학군등의 고전적인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도 아직도 유효하지만, 입주민들의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다른 구체적인 요소도 파악해야 하지요. 예를 들면 꿈&휴 작은도서관은 부동산에서 아파트 가치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주요 도구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내내 언제나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고, 매달 신간 도서가 들어오는 곳,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강좌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인정 받는 것 자체가 수요 증진을 통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 공간인가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 공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간이 반드시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출발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자기정체성도 있기에 공동체적 요소와 의사소통의 공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성과들도 나고 있지만, “도서관”을 매개로 입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자기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유아 대상 책놀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입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에 관련 도서 소개 및 원화 전시등은 대표적인 작은도서관 고유의 정보제공 활동입니다.

25. 아파트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인 지원제도 문제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1,000세대이상을 대규모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 단지가 50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 있으니, 500세대 아파트와 규모면에서 10배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을 항목에서 보면, 전체 규모로 산정하여 평가에 넣습니다. GDP와 1인당GDP 차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당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지표 산정상 합리적입니다. 단순 절대적인 크기로 하면 단지 규모에 따라 지표(프로그램수, 도서수, 대출권수, 회원수등)를 환산,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Part I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6. 08. 11.) 2조(정의) 3항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경로당
- 나. 어린이놀이터
- 다. 어린이집
- 라. 주민운동시설
- 마.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사. 청소년 수련시설
- 아. 주민휴게시설
- 자. 독서실
- 차. 입주자집회소
- 카. 공용취사장
- 타. 공용세탁실
- 파. 「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Part III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7. 08. 09)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할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8. 09)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중략 ~~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요약 ~~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입주자를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 (2017.3 시행)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에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 중략 ~~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 중략 ~~
15.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6. 자생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 중략 ~~

Part IV

센트럴타운 관리규약중 예산안 마련과 집수의 지출 명문화 (2017.1.4 시행, 5차개정)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 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제6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 중략 ~~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

한다.

~~ 중략 ~~

5. 입주자대표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전체 입주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의 소송비용(단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6. 커뮤니티(작은도서관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주민지원센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직원 포상비, 명절선물비 등)
8. 주민명절선물비, 마을축제비 등

~~ 중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대통령령 제27780호 일부개정 2017. 01. 10)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중략 ~~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중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종략 ~~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절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략 ~~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절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제29조의 2(대통령령 제27780호 일부개정 2017. 01. 10)

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신설 2017.1.10]

제29조의 3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8.16]

참고문헌

- 내경기지역본부, 2010, 성남여수 휴먼시아 B-1블럭 분양 안내문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2016, 경기도
- 공동주택관리법, 2017, 법제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7, 법제처
- 국토교통부, 2017,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김상렬외 3명, 2016, 2005년이후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센터 지원 조직 모델 유형 및 시사점,
- 김해뉴스, 2016, 도서관 놓고 아파트 주민 간 다툼(기사)
- 도촌동 주민센터, 2017, 인구통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 p 218
- 박경옥, 2016, 2016 아파트DAY 심포지엄 『아파트공동체를論하다』 중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광주광역시광산구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준칙, 2016, 서울시
- 성남센트럴타운 관리규약 및 규정들, 2017, p231
- 성남센트럴타운 관리사무소(주민지원센터), 2013~2017, 각종 내부 자료
-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자치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2012, 법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 법제처
- 하워드도시건축연구소, 2014. 주거 트렌드에 따른 커뮤니티 특화 방안, 하우드리포트 No.39

〈마을공동체 관련〉

- 곽다혜, 2015, 아파트 단지마다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아십니까 (기사), 데일리한국
- 김수정, 2016, 닫혀있던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책 문화공간김우필, 2015, 공부하는 도서관보다 놀이하는 도서관을 바라는 이유, 플랫폼, 통권 54
- 송두범, 2016, "공공도서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갖춰야 활성화"(칼럼), 세종의소리로 (기사), 내일신문
- 아파트관리신문, 2017, 아파트 행복한 작은도서관...“이웃과의 만남·소통의 장소로” (기사)
- 안수정, 2016,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방안, 희망이슈, 제1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6,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광주개발연구원, 포커스양산 시민신문, 2016, 창고로 둔갑한 '작은도서관' (기사)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p35-77

임가영, 2016, 작은도서관 실태 점검 '하나마나'...부실 운영해도 제재 규정 없어, 충북방송

임동근, 2016, 아파트DAY 심포지엄 『아파트공동체를論하다』 중 통계로 보는 아파트,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

전북일보, 2013,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입주민 적극적인 관심 필요 (기사)

한국일보, 2015, 동네도서관 들어서니... 마을이 재잘재잘 공동체도 살아나(기사)

한겨레, 2015, 아파트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로 진화 '꿈틀' (기사)

한상수, 2012, 아파트도서관 활성화 어떻게 할까?, 동네책방작은도서관

한아름, 2014, 작은도서관 경기도에만 벌써 1,301곳, 대한민국정책기자단 (기사)

희망제작소,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자료집). p54

〈커뮤니티센터 공간 구획 관련〉

박한진, 2016,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석사)

윤여학, 201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계획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석사)

장명숙, 2011,공동주택단지내 문화시설의 이용실태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송도국제단지내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차성미, 201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위논문(석사)

에필로그

지난 2017년 3월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모시점은 성남센트럴 타운 입대의 회장 임기 4년(기수당 2년임기에 연임)에서 1~2달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다. 부적절한 시점 이었지만,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정 연구주제로써 선정되어 내용적으로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입대의 회장으로서는 4년 기간동안(입주전부터 계산하면 약 7년), 한 아파트의 여러 경험들과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간과 공간을 좌표로 하여 한 아파트의 변화를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고민의 출발점은 너무 분업화된 학문 및 연구 구조 탓이기도 했고, 다양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 지향적인 정책연구가 미진한 탓이기도 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요구일 것이다. 이런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제만 해도 그렇다. 이해당사자는 입주민들외에 관리사무소, 다양한 행정관청 부서(공동주택과,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 각종 네트워크가 있겠지만, 현장 기반의 조사 분석이나 참고할만한 자료는 부재이다. 더구나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지자체 부서 입장을 보면서 책임지지 않는 말이 가지는 한계에서 벗어나 무언가 “텍스트”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생겼다. 기초 조사나 연구가 충실히 되어 있지 않은 현실과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토론과 논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기도 하였다.

얼추보니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조차 전부 읽기 쉽지 않은 분량이다. 시간을 절약하고자 할 때, 목차를 보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우선 살펴보게 된다.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Part III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 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과

‘Part V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Part IV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향 및 제안’은 정책 기획자나 네트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원래 초기 정책연구 의도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 유형과 직원 유형 모델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장, 단점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진행하다보니 자원활동가 유형의 자료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시간적 자료 축적의 부재, 아파트 관리와 그 방향 선상에서 입대의산하 직원 고용 유형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확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공간과의 관계 선상에서 차라리 입대의 산하 유급 직원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한 대조군 형태로 아파트 도서관에서 일반적인 자원활동가 모델을 비교하는 걸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앞서 서술한 일부 내용들이 기존 작은도서관에서 업무를 진행해왔던 분들에게 불편을 드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의무적으로 조성되고 입주민들이 운영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공간이다. 현재 탄생 배경은 그렇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체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차원으로 정상화하는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동일한 사립 범주에 들어가지만 작은도서관 명칭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공립 작은도서관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편의)시설로서의 논의와 운영의 정상화 방안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대신 전체 아파트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성하는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아파트 관련 기사는 부동산의 교환가치와 부정비리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자는 아파트 공화국의 자연스런 현상이고, 후자는 결국 아파트 권력

구조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여준다. 후자를 바꿔 생각해보면, 심의의결 기관인 입대의와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를 작은 도서관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름길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입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가치도 없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제학(부동산)적 의미, 관리 그리고 공동체 방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4월 이후로, 나는 성남센트럴타운 입대의 회장에서 물러나 아파트 관련 공적 업무들은 서서히 내려놓고 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이미선씨도 10월 13일부로 퇴사를 하면서 만3년 2개월만에 꿈&휴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에서 물러났다. 그러던 차에, 꿈&휴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문적인 도서관장을 공모하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3기 입대의 구성원이 도서관 전문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시도가 일년 후에 어떤 결과와 평가를 낼지도 궁금하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공감능력과 협업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간이다. 더불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책을 통해 서로 만나고,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로써 가장 사랑받길 기대한다.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 근거이기 때문이다.